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

Copyright © by helloinsa All rights reserved.

❑ 연말정산의 개요

1.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 : “미리 내는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자는 매월 회사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받을 때, 세법이 정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매월 수령하는 총급여액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미리 납부하는 바, 이를 ‘원천징수’라고 한다.

2. 연말정산 : 1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내야 할 근로소득세의 확정”

근로소득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익년도 2월에 개별 근로자들의 당해연도 총 근로소득에 대하여 개별 근로자들이 실제로 국가에 내야 할 근로소득세를 확정하여야 하는 바,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연말정산을 통하여 확정된 근로소득세(이를 “결정세액”이라고 한다)과 2025년 1월~12월 급여 수령 시 미리 국가에 낸 원천징수세액(이를 “기 납부세액”이라 한다)을 비교하여, 미리 낸 원천징수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근로소득자에게 되돌려주고(환급), 결정세액보다 작으면 추가 납부함으로써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과정을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 원천징수에 의한 기납부세액 > 연말정산에 의한 결정세액 ” → 환급
“ 원천징수에 의한 기납부세액 < 연말정산에 의한 결정세액 ” → 추가징수납부

3. 종합소득 확정신고와의 관계

근로소득 이외의 부동산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근로자 또는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수행한 근로자 또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등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통하여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올바르게 연말정산을 수행한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종결되었으므로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는 하지 않는다.

❑ 연말정산 의무자

1. 계속 근로자(재직중인 자)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개인, 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 포함)은 원천징수의무와 함께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 의무도 있다.

☞ 일반적인 연말정산의 시기는 다음연도 2월 중에 실시한다. 비록 2월에 회사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근로소득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전년도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2월 중에 실시하여야 한다.

2. 중도퇴사자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 포함)은 원천징수의무와 함께 퇴직하는 달 급여 지급 시 해당연도 근로소득금액에 근로자가 근로자 소득,세액공제를 신청한 내용에 따라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연말(중도)정산을 수행한다.

☞ 중도 퇴직자가 소득공제 영수증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퇴직근로자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와 표준세액공제(13만원)만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한다.

3 . 재취업자

해당 연도 중에 퇴직한 근로자가 다른 근무지에 새로 취업한 때에는 그 새로운 근무지의 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로자로부터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제출받아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수행한다.

그리고 재취업자는 전근무지에서 1차적으로 연말정산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소득합산 시 전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상 기납부 세액이 아닌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야 정확한 세액이 계산된다.

4. 이중 근무자

근로자가 2이상의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결정한 주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종근무지 근로소득까지 합산하여 해당연도 연말정산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① 소득지급 전에 근로자가 주근무지를 결정하여 주근무지에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제출하면 주근무지와 종근무지 원천징수 의무자는 각각 간이세액표에 원천징수 한다.

② 종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과 같이 약식 연말정산을 수행하고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 및 국세청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

추가징수세액(환급세액)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 × 기본세율 – 매월 원천징수 한 세액

③ 근로자는 종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을 주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주근무지 원천징수 의무자는 종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수행한다.

2)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주근무지와 종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각각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각각 연말정산을 수행한다. 추후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다.

5. 파견근로자

파견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의무자는 근로소득지급의 당사자인 파견사업주이다.
즉, 근로계약상 또는 계산의 편의상 사용사업주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받더라도 용역수행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파견사업주에서 사용주에게로 발급이 되었을 것임으로 연말정산 의무자는 사용사업주가 아님에 유의하여야 한다.

6 . 법인의 본 · 지점간 전출입

법인 임직원의 본 · 지점간 전출입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으므로 현재 근무사업장에서 전출사업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출사업장에서는 연말정산을 수행하지 않으며, 근로소득지급명세서도 현재 근무사업장에서 제출하면 된다.
원천징수영수증 작성 시 전출사업장에서 받은 급여를 종(전)근무지에 구분하여 작성하고 기납부 세액란에 간이세액표에 의해 전근무지에서 매월 원천징수 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하면 된다.

7. 관계회사 전·출입

1) 고용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사용인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시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전입법인에서 연말에 통산하여 연말정산을 수행한다. (본· 지점간 전출입의 예로 연말정산을 수행한다.)

2) 고용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전출법인은 중도퇴사자로 연말정산을 수행하고 전입법인은 전출법인 분 근로소득을 전 근무지로 보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수행한다. 즉, 전입법인 입장에서 재취업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 하면 된다.

8. 합병 및 분할

1) 합병의 경우

합병의 경우 피합병 법인의 임직원이 합병법인에 계속 취업하고 소득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 경우에는 당해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을 합병법인이 하여야 한다.
피합병 법인이 지급한 근로소득과 원천징수내역을 전근무지의 소득과 기납부 세액으로 구분기재 한다. 다만, 합병등기일 전에 중도퇴사 한 피합병 법인의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2) 분할의 경우

법인이 분할함에 있어서 분할법인의 임직원이 분할신설법인에 계속 근무하고 소득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임직원의 연말정산은 분할신설법인에서 하는 것이고,
지급명세서 제출도 연말정산 하는 분할신설법인에서만 제출하여야 하며,
분할신설법인에서 분할법인이 지급한 근로소득과 원천징수내역을 원천징수영수증상 전근무지의 소득과 기납부세액으로 구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여야 한다.
즉, 본지점간 전출입의 예로 연말정산 하면 된다.

※ 연말정산 의무자와 세무처리 방법

근로소득의 유형별 연말정산 의무자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퇴충 : 퇴직급여충당금)

구분	연말정산 의무자	
계속근로자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법인(개인, 국가, 지자체 포함)	
중도퇴사자	퇴직 시 급여를 지급하는 법인 등(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자료로)	
재취업자(전근무지가 있는 근로자)	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 : 중도퇴사자와 동일 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 : 전근무지분 합산하여 연말정산 수행가능	
이중근로자(근무지가 2이상인 근로자)	종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 : 약식 연말정산 수행 주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 : 종근무지분 합산하여 연말정산 수행	
파견근로자	파견 보낸 사업주(파견 받은 사업주가 아님)	
본,지점간 전출입	현근무사업장	
원천징수제외대상 근로소득	납세조합가입분에 대해서만 납세조합이 연말정산 수행	
관계회사간 전출입	고용 및 퇴충승계 O	전입법인 원천징수의무자 : 전출법인분 합산하여 연말정산 수행
	고용 및 퇴충승계 ×	재취업자와 동일
합병(분할)	고용 및 퇴충승계 O	합병(분할신설)법인 원천징수의무자 : 피합병(분할)법인분 합산하여 연말정산 수행
	고용 및 퇴충승계 ×	재취업자와 동일
사업양수도	고용 및 퇴충승계 O	사업양수기업 : 사업양도 기업분 합산하여 연말정산 수행가능
	고용 및 퇴충승계 ×	재취업자와 동일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고용 및 퇴충승계 O	전환된 법인 : 개인기업분 합산하여 연말정산 수행
	고용 및 퇴충 승계×	재취업자와 동일

❑ 연말정산 시기

1. 원칙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에 연말정산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근로자가 연중에 퇴사하는 경우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수행한다.

3. 특수한 경우 연말정산 시기

1) 급여의 소급인상 : 소급인상분 급여의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도"로 본다.

구분	연말정산시기	신고납부
당해 연도 이전 분	소급인상분 급여지급 시 연말정산 재정산	지급명세서와 증가되는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당해 연도 분	일반적인 연말정산과 동일하게 다음연도 2월 급여지급 시	지급명세서와 세액은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납부

2) 인정상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 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상여 등의 수입시기(귀속시기)는 해당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다.
인정상여의 발생 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 106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에 대하여 원천징수 할 소득세는 당해 과세기간에 귀속한 동 상여 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다시 수행하여야 한다.

인정상여는 법인세 신고일, 수정신고일 또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나, 소득의 귀속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연도이며, 법인세 신고일, 수정신고일 또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재정산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상의 소득금액을 기재하며, 수정신고 형식을 취하지 아니한다.
즉, 인정상여분에 대한 근로소득의 귀속연월은 해당연도의 다음연도 2월로 표시한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2024년 분은 "2025년 2월" 형태로 표시하는 것이다.
상기 기간에 연말정산을 수행하고 신고, 납부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가산세는 없다.

❑ 연말정산 수정신고 와 경정청구

1. 수정신고

1) 과세관청이 2026.3.11 ~2026.5.31. 사이에 잘못된 소득,세액공제 내용을 회사에 통보하는 경우

2025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2026.3.10까지 이며,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2026.5.31.까지 이다.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날 이후부터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2026.5.31. 사이에 소득, 세액공제 항목 중 잘못된 내용을 회사에 통보하면 회사는 이를 근로자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사실인 경우 근로자가 본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도록 한다.

이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회사가 연말정산을 수정신고, 납부하지 않고 근로자 본인이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 추가납부 세액만을 납부하도록 한다.

2) 과세관청이 2026.6.1.이후에 잘못된 소득,세액공제 내용을 회사에 통보하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소득세를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회사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만을 적용 받게 되므로 회사가 수정신고 하는 것이 유리하다. 원칙적으로 이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근로자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데 실무상 적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 경정청구

연말정산에 대한 경정청구는 근로자가 직접 다음의 서류를 주소지관할세무서 소득세과에 제출하여 소득세 및 환급가산금을 받는다.

① 경정청구서(국세기본법 별지 제16호의2 서식)
② 당초분, 정정분 원천징수영수증
③ 당초분, 정정분 소득,세액공제신고서
④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

☞ 2016년 2월부터 국세청의 홈택스에서 경정청구서 및 정정분 원천징수영수증이 작성되므로 이를 이용하면 간편히 경정청구 할 수 있다.

❑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계산 절차

<table>
<tr><th>항목</th><th colspan="2">구 분</th><th>공제금액・한도</th><th colspan="3">공 제 요 건</th></tr>
<tr><td rowspan="10">인적공제</td><td colspan="2" rowspan="9">기본공제</td><td rowspan="9">1명당
150만원</td><td>구분</td><td>소득요건*</td><td>나이요건**</td></tr>
<tr><td>본인</td><td>×</td><td>×</td></tr>
<tr><td>배우자</td><td>○</td><td>×</td></tr>
<tr><td>직계존속</td><td>○</td><td>만 60세 이상
(1965.12.31.이전 출생)</td></tr>
<tr><td>형제자매</td><td>○</td><td>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td></tr>
<tr><td>직계비속
(입양자 포함)</td><td>○</td><td>만 20세 이하
(2005.01.01.이후 출생)</td></tr>
<tr><td>위탁아동</td><td>○</td><td>만 18세 미만
(2007.01.02 이후 출생)</td></tr>
<tr><td>기초수급자 등</td><td>○</td><td>×</td></tr>
<tr><td colspan="3">*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근로.사업 및 양도.퇴직소득금액 합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적용하지 않음
** 위탁아동 :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만20세 이하 포함</td></tr>
<tr><td rowspan="3">추가공제</td><td>경로우대</td><td>1명당 100만원</td><td colspan="3">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1955.12.31.이전 출생)</td></tr>
<tr><td>장애인</td><td>1명당 200만원</td><td colspan="3">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td></tr>
<tr><td>부녀자</td><td>50만원</td><td colspan="3">근로소득금액이 3천 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로서 세대주</td></tr>
<tr><td>한부모</td><td>100만원</td><td colspan="3">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 배제)</td></tr>
<tr><td colspan="3">연금보험료 공제</td><td>전액</td><td colspan="3">근로자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공무원연금법 등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부담한 부담금.기여금</td></tr>
<tr><td rowspan="2">특별소득공제</td><td rowspan="2">보험료</td><td>건강보험료</td><td>전액</td><td colspan="3">근로자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본인부담분)</td></tr>
<tr><td>고용보험료</td><td>전액</td><td colspan="3">근로자 본인 명의의 고용보험료(본인부담분)</td></tr>
</table>

항목	구 분		공제금액・한도	공 제 요 건
특별소득공제	주택자금	①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400만원 한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②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이자 상환액공제	이자상환액 (600만원, 800만원, 1,800만원 2,000만원 한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 주택*(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14년 이후 차입금부터 '국민주택규모 기준' 삭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 차입금의 상환기간 15년 이상 -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 -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인일 것
			공제 한도액	- '12.1.1. 이후 상환기간 15년 이상(고정금리and비거치식) : 2,0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고정금리or비거치식) : 1,8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상기 이외) : 800만원 상환기간 10년 이상~15년 미만(고정or비거치식) : 600만원 -'11.12.31 이전 차입분 상환기간 15년 이상(고정금리and비거치식) : 2,0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고정금리or비거치식) : 1,800만원 상환기간 30년 이상 : 1,5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29년 미만 : 1,000만원 상환기간 10년 이상~15년 미만 : 600만원
그밖의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연 72만원 한도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 180만원 납입 시 연 72만원 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연 300만원 한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법인대표자가 총급여액 8천 만원 이하이면 소득공제 허용(2016.1.1.이후 가입분 부터 적용)
	주택마련 저축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 합하여 400만원 한도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가입 당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주의배우자 (2009.12.31. 이전 가입자만 해당) * 주택마련저축 (총급여 7천 만원 이하일 것) ・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연 납입액 300만원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300만원 이하)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간접투자 형식 10% 직접투자 형식 100,70,30% 공제한도 = 종합소득금액의 50%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 등에 투자 시 투자한 연도에 공제함이 원칙이나 투자자의 선택에 따라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선택하여 1과세연도에 공제 <개인이 벤처기업·벤처조합에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율> -.3000만원 이하: 100% -.3000만원~5000만원 이하: 70% -.5000만원 초과: 30%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

항목	구 분	공제금액・한도	공 제 요 건
그 밖의 소득 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 25%) ×공제율	(소득공제율) - 15% 공제대상 : 신용카드 사용액 - 30% 공제대상 사용금액 ・현금영수증,직불카드(체크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선불 전자지급수단 등 ・문화체육 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 40% 공제대상 사용금액 ・전통시장 사용분(카드, 현금영수증) ・대중교통 이용분(카드, 현금영수증) (기본공제 한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300만원 -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250만원 (추가공제 한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Min[한도초과금액,{(도서공연사용액×공제율(30%)) +(전통시장사용액×공제율(40%))+(대중교통사용액 x공제율(40%)),300만원) -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Min[한도초과금액,{(전통시장사용액×공제율(40%)) +(대중교통사용액x공제율(40%)),200만원)
	우리사주조합 소득공제	연 400만원 한도 (벤처기업 등 1500만원)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저축납입액(연 납입한도 600만원)의 40% (연 240만원 한도)	2015.12.31까지 가입 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5천 만원 이하 근로자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해당 과세기간 8천 만원 이하 근로자)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	만 19~34세 , 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계약기간 3~5년
소득공제 종합한도		연 2,500만원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에 대해 종합한도 적용 - 적용대상 :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출자 등,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table>
<tr><th>항목</th><th>구 분</th><th>공제금액・한도</th><th>공 제 요 건</th></tr>
<tr><td rowspan="6">세액감면・세액공제</td><td>외국인 기술자 세액감면</td><td>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소득세50% 감면</td><td>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 또는 특정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 시설에 연구원 등으로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날로부터 10년간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의 50%감면</td></tr>
<tr><td>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td><td>취업일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의 90%,70% (한도200만원) ('13년 이전 100%,'14~15년 50%)</td><td>청년(만 34세 이하), 60세 이상인 자 및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 장애인인 경우 2014.1.1. 경력단절근로자 2017.1.1.이후)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70%(청년 90%) 감면

* 70% 감면비율 적용대상자 (200만원한도)
- 2016.1.1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2017.1.1. 이후 재취업)
* 90% 감면비율 적용대상자 (200만원 한도)
- 만 34이하 청년
-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td></tr>
<tr><td>근로소득 세액공제</td><td>계산산식에 따름</td><td><table><tr><th>산출세액</th><th>공제금액</th></tr><tr><td>130만원 이하</td><td>55%</td></tr><tr><td>130만원 초과</td><td>71만5천원 + 130만원 초과금액의 30%</td></tr></table>
<공제한도>
・총급여액이 3천3백만원 이하 : 74만원
・총급여액이 3천3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74만원 - [(총급여액 – 3천3백만원)×8/1000]
` → 66만원보다 적은 경우 66만원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
: 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1/2]
→ 50만원보다 적은 경우 50만원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 초과
: 50만원 - [(총급여액 – 1억2천만원)×1/2]
→ 20만원보다 적은 경우 20만원</td></tr>
<tr><td>혼인세액공제</td><td>연 50만원</td><td>`24년~26년`까지 혼인신고 한 근로자에 대하여 혼인신고를 한 해에 50만원 세액공제 (생애 1회에 한함)</td></tr>
<tr><td rowspan="2">자녀세액공제</td><td>자녀</td><td>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8세 이상인 자녀(입양자,위탁아동 포함) 및 손자녀
1명 : 연 25만원
2명 : 연 55만원
3명 이상 : 연 55만원 + 2명 초과 1명당 40만원</td></tr>
<tr><td>출생·입양</td><td>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자녀 또는 입양 신고한 입양자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td></tr>
</table>

<table>
<tr><th>항목</th><th colspan="3">구 분</th><th>공제금액・한도</th><th>공 제 요 건</th></tr>
<tr><td rowspan="15">세액감면・세액공제</td><td rowspan="4">연금계좌</td><td colspan="2">과학기술인공제</td><td rowspan="4">(납입한도)
(1)연금저축+퇴직연금 연9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
(2) ISA 전환액 :
전환금액의 10%(300만원 한도)

(세액공제율)
(1)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15%
(2)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12%</td><td>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근로자 납입액</td></tr>
<tr><td colspan="2">퇴직연금</td><td>-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DC형 퇴직연금・개인형퇴직연금(IRP) 근로자 납입액
- 중소기업 퇴직연금</td></tr>
<tr><td colspan="2">연금저축</td><td>연금저축계좌 근로자 납입액</td></tr>
<tr><td colspan="2">ISA만료에 따른 전환액</td><td>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전환금액)</td></tr>
<tr><td rowspan="11">특별세액공제</td><td colspan="2">보장성보험료</td><td>보험료 납입액
(100만원 한도) × 12%</td><td>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td></tr>
<tr><td colspan="2">장애인 보장성보험료</td><td>보험료 납입액
(100만원 한도)× 15%</td><td>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하는 장애인 전용보험에 지출한 보험료</td></tr>
<tr><td rowspan="9">의료비</td><td>① 본인</td><td rowspan="9">의료비 공제 대상금액* × 15%
(난임시술비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 의료비 공제 대상금액
・본인, 65세 이상, 6세 이하자,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난임시술비
: 한도 없음

・그 외 부양가족
: 연 700만원</td><td rowspan="9">총급여 3%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 가능
・진찰, 치료 등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 비용 (미용・성형수술비용 제외)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용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시력교정용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1인당 연 50만원 이내 금액)
・산후조리원비용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보청기 구입비용
・장기요양급여비 중 본인 일부 부담금

-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계산
<table><tr><th>구 분</th><th>의료비 공제금액</th></tr><tr><td>⑧ < 총급여액 3%</td><td>(①+②+③+④+⑤+⑥+⑦) - (총급여액 3% - ⑧)</td></tr><tr><td>⑧ >= 총급여액 3%</td><td>(①+②+③+④+⑤+⑥+⑦) + Min[(⑧-총급여액 3%), 700만원]</td></tr></table>
※ ②, ③, ④, ⑤, ⑥, ⑦, ⑧ : 나이・소득금액 제한 없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해당되어야 함</td></tr>
<tr><td>② 65세 이상</td></tr>
<tr><td>③ 6세 이하</td></tr>
<tr><td>④ 장애인</td></tr>
<tr><td>⑤ 건강보험산정특례자</td></tr>
<tr><td>⑥ 난임시술비</td></tr>
<tr><td>⑦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td></tr>
<tr><td>⑧ 그 외 부양가족</td></tr>
</table>

항목	구 분				공제금액・한도	공 제 요 건
세액감면・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교육비	취학전 아동		나이제한을 받지 않음 (직계존속은 공제대상 아님) 교육비 공제대상 금액* × 15% *교육비 공제대상 금액 취학전아동, 초・중・고생 : 1명당 300만원 한도 대학생 : 1명당 900만원 한도 본인, 장애인 : 한도 없음	보육료, 학원비・체육시설수강료, 유치원비, 방과후수업료, 특별활동비, 도서구입비, 급식비 (재료비, 기타필요경비 제외)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금, 방과후학교 수강료 (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국외교육비, 교복구입비(중・고생 50만원 이내) 체험학습비 (한도: 학생 1인당 연 30만원) 수능시험 응시수수료와 입학전형료
			대학생			교육비, 국외교육비(국외유학요건 폐지)
			근로자 본인			교육기관 교육비,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과 시간제 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장애인 특수교육비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 이 경우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가능
		기부금	정치자금	10만원 이하	기부금의 100/110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금액 - 근로자 본인의 정치자금기부금만 공제 가능
				1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 15% ・1천만원 초과 : 30% ・3천만원 초과 : 25%	
			고향사랑	10만원 이하	기부금의 100/110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 - 근로자 본인의 기부금만 공제 가능
				10만원 초과 (일반)	・10만원 초과 15% (연간 한도 2,000만원)	
				10만원 초과 (특.재)	・10만원 초과 30% (연간 한도 2,000만원)	
			특례기부금		・1천만원 이하 : 15% ・1천만원 초과 : 30% ※ 공제한도 ・특례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의 100% ・일반(종교단체외) : 근로소득금액의 30% ・일반(종교단체) : 근로소득금액의 10%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제외)			사회복지・문화 등 공익성을 고려한 지정기부금 단체 중 비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종교의 보급,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에 기부한 기부금

항목	구 분		공제금액・한도	공 제 요 건
	특별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연 13만원	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적용 ※정치자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세액공제와 중복적용 가능
세액감면・세액공제	납세조합 세액공제		납세조합 원천징수 세액의 5%	-원천징수 제외대상 근로소득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매월분의 급여를 원천징수 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5% 세액공제 -연말정산시, 당해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3%를 산출세액에서 공제 -조합원 1인당 연간 100만원 공제한도
	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세액공제		이자상환액의 30%	'95.11.1~'97.12.31 기간 중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95.11.1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 이자상환액을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 ※ 세액공제한도 $\text{근로소득 산출 세액} \times \frac{\text{국외근로소득금액}}{\text{근로소득금액}}$
	월세세액공제		월세액(연 1,000만원 한도)의 15%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자는 17%)	-연말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함 -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 배우자, 부양가족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

❑ "총 급여액" 이란?

1년간의 총 근로소득에서 비과세근로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을 의미한다.

총 근로소득액

① 급여(자격수당, 장기근속수당 등 포함)
② 상여(특별상여, 성과급 등 포함)
③ 인정상여(소득처분으로 인한 인정이자 등)
④ 복리후생적 급여(기타수당, 학자보조금, 의료비지원액 등)
☞ 근로제공의 대가로 회사로부터 지급 받은 모든 금품 포함

—

비과세급여

- 소득세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비과세근로소득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육아보육수당, 국외근무수당 등)

=

총 급여액

: "과세대상 근로소득"을 의미함

❑ 근로소득공제 (필요경비)

총 급여액 수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공제해주므로 별도의 입증서류 제출 하지 않는다.

총 급 여 액	공제율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 초과액 ×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하는 금액 × 15%)
4,500만원 초과 1억 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하는 금액 × 5%)
1억 원 초과	1,475만원 + (1억 원 초과하는 금액 × 2%)

※ 근로소득공제는 2,0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 계산사례
* 총 급여액이 3,5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액
→ 7,500,000 + (35,000,000 – 15,000,000) × 15% = 10,500,000
* 총 급여액이 8,0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액
→ 12,000,000 + (80,000,000 – 45,000,000) × 5% = 13,750,000

※ 근로소득 과세대상 Flow

<table>
<tr><th>근로소득금액 계산</th><th>대상</th><th>쓰임새</th></tr>
<tr><td>근로제공으로 받은 총 소득</td><td>• 사용자 등으로부터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금전, 현물 등으로 받는 모든 것</td><td></td></tr>
<tr><td>(-) 근로소득 과세제외
(근로소득 자체로 보지 않는 것)</td><td>•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경조금
• 출,퇴근 차량운임상당액
• 법소정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법소정 사택제공이익
•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연70만원 이하), 퇴직보험료, 건설공제회공제부금,
임원손해배상보험료 불입액등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용도사업수행으로 지급하는 보조금
• 법소정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 취득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 법소정 종업원이 법소정 요건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소득</td><td></td></tr>
<tr><td>(=) 근로소득
(비과세 소득포함)</td><td>• 과세근로소득과 비과세근로소득을 포함하는 개념임
•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범위와 100%일치하지는 않음</td><td>•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 분리과세(근로소득 x 19%)</td></tr>
<tr><td>(-) 비과세근로소득</td><td>• 일반 비과세(소법 12조)와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과세(소령12조)</td><td></td></tr>
<tr><td>(=) 총급여(과세대상근로소득)</td><td>• 근로소득총수입금액이라고도 함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 총급여</td><td>• 근로소득공제
• 의료비세액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소기업등공제부금 소득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 월세세액공제</td></tr>
<tr><td>(-) 근로소득공제</td><td>
<table>
<tr><th>총급여액</th><th>근로소득공제액</th></tr>
<tr><td>500만원 이하</td><td>총급여액x70%</td></tr>
<tr><td>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td><td>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x40%</td></tr>
<tr><td>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td><td>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x 15%</td></tr>
<tr><td>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td><td>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x 5%</td></tr>
<tr><td>1억원 초과</td><td>1475만원 + 1억원 초과액x2%</td></tr>
</table>
2,000만원 한도</td><td></td></tr>
<tr><td>(=) 근로소득금액</td><td>• 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소득과 함께 종합소득 금액구성</td><td>• 기부금세액공제
• 소기업등 공제부금 소득공제</td></tr>
</table>

※ 비과세 근로소득

일반비과세 (소법 제12조 3호)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소령 12조)
• 복무 중인 병이 받는 급여 •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등 • 업무관련 부상,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 보상 또는 위자료 • 근로기준법,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등 •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고용지원센터지급분만) • 제대군인지원에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지원금 •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만) 및 사망일시금 •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받는 요양비 등 및 신체, 정신상의 장애,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 법소정의 본인 학자금(임원포함) • 외국정부, 국제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 •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 작전임무를 수행중인 외국 주둔 군인, 군무원이 받는 급여 • 종군한 군인, 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포함)한 경우 그 전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 • 국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월 100만원(원양선원, 국외건설근로자 등은 월500만원) • 국민건강보험 등 사용자 부담금 •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가 수령한 연장근로수당 등(연 240만원) • 식사 또는 근로자당 월 20만원 이하의 식대 • 출산, 6세 이하(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자녀보육수당(월 20만원 이내) • 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위로지원금과 그 밖의 금품 •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학교로부터 받는 국가근로장학금 •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다)으로서 연 700만원 이하의 금액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 사용자 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	• 법령, 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 • 선원법에 따라 받는 식료 • 일직료, 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 자가운전보조비(월 20만원 이내) • 법령, 조례에 의하여 받는 제복, 제모 및 제화 • 병원등 특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받는 작업복 및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 특수군인 등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 등 • 선원이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및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 등 • 광산근로자가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 학교교원, 연구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및 연구활동비 (중소기업연구전담부서 연구원포함) 20만원 이내 • 방송, 신문 등의 기자 등이 받는 취재수당(월20만원 이내) • 근로자 벽지근무수당(월 20만원 이내) • 근로자가 천재, 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 국가, 지자체가 지급하는 다음의 수당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의 근무환경개선비 - 유아교육법에 따른 사립유치원 수석교사의 인건비 - 전문의의 수급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문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지원금

※ 근로소득의 귀속시기

귀속시기란 세법상 소득의 발생시기를 의미하며, 해당연도의 근로소득을 확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이에 따라 소득의 과세연도가 결정된다.
따라서 근로소득의 귀속연도에 따라 연말정산시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구분	귀속시기(수입시기)
급여(미지급급여포함)	근로제공일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인정상여	근로제공일 월평균금액산정이 2사업연도에 걸친 경우 각 연도 중 근로 제공일
소득세법상 임원퇴직소득 한도초과액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받는 급여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 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확정일 다만, 그 확정일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을 그 수령일
성과급급여(계량적 + 비계량적)	개인별로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 (다만, 계량적 요소로만 평가하는 경우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
연차휴가수당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 년의 익월, 익년
부당해고기간급여	근로제공일(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봄)
급여 소급인상분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월
사이닝 보너스	계약조건에 따라 근로기간 동안 안분

□ 공제항목별 공제대상자의 요건 및 범위

아래의 **항목별 공제대상자의 요건 및 범위를 충족하면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지출비용을 근로자 본인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항목			공제대상 요건			공제대상자의 범위						
			생계 요건	나이 요건	소득 요건	본인	배우자	직계 비속	직계 존속	형제 자매	위탁 아동	기초 수급
인적 공제	기본공제 (나이요건 배제 : 배우자, 위탁아동, 기초수급자, 장애인)		○	○	○	○	○	○	○	○	○	○
	추가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	○	○	○	○	○	○	○	○	○
연금보험료 공제			-	-	-	○	×	×	×	×	×	×
특별 소득 공제	보험료(건강,고용보험료)		-	-	-	○	×	×	×	×	×	×
	주택 자금	임차원리금	-	-	-	○	×	×	×	×	×	×
		저당차입금	-	-	-	○	×	×	×	×	×	×
그 밖의 소득 공제	개인연금저축		-	-	-	○	×	×	×	×	×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	-	-	○	×	×	×	×	×	×
	주택마련저축공제		-	-	-	○	×	×	×	×	×	×
	투자조합출자 등		-	-	-	○	×	×	×	×	×	×
	신용카드 등 사용액		○	×	○	○	○	○	○	×	×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	-	-	○	×	×	×	×	×	×
	고용유지중기근로자		-	-	-	○	×	×	×	×	×	×
	장기집합투자저축		-	-	-	○	×	×	×	×	×	×
	청년형 장기펀드		-	-	-	○	×	×	×	×	×	×
결혼 세액공제			-	-	-	○	×	×	×	×	×	×
자녀 세액공제			○	○	○	×	×	○	×	×	○	×
연금계좌 세액공제			-	-	-	○	×	×	×	×	×	×
특별 세액 공제	보험료(보장성)		○	○	○	○	○	○	○	○	○	○
	의료비		○	×	×	○	○	○	○	○	○	○
	교육비		○	×	○	○	○	○	×	○	○	×
	교육비(특수교육비)		○	×	×	○	○	○	○	○	○	×
	기부금		○	×	○	○	○	○	○	○	○	○
	기부금(정치자금,고향사랑, 우리사주조합)		-	-	-	○	×	×	×	×	×	×
주택차입금이자 세액공제			-	-	-	○	×	×	×	×	×	×
월세세액공제			-	-	-	○	×	×	×	×	×	×

□ 지출시기에 따른 소득,세액공제 적용 여부

근로자 본인의 근로제공기간(종전 회사의 근무기간 포함)에 지출한 금액과 근로제공 이외의 기간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공제항목별로 공제받을 수 있는 지출금액의 범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특히 **중도입사자(신규입사자 및 재취업자를 말함)의 경우, 당해 연도에 지출한 금액 중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판단기준이 된다.**

공제항목			지출시기별 소득,세액공제 여부	
			근로제공기간 비용	미근로기간 비용
인적공제	기본공제		○	○
	추가공제		○	○
연금보험료 공제			○	○
특별 소득공제	보험료(건강,고용보험료)		○	×
	주택 자금	주택임차원리금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	○
	주택마련저축공제		○	×
	투자조합출자 등		○	○
	신용카드 등 사용액		○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	×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	×
	장기집합투자저축		○	×
	청년형 장기펀드		○	×
근로소득 세액공제			○	○
결혼 세액공제			○	○
자녀 세액공제			○	○
연금계좌 세액공제			○	○
특별 세액공제	보험료(보장성보험료 등)		○	×
	의료비		○	×
	교육비		○	×
	기부금		○	○
	표준세액공제		○	○
주택차입금이자 세액공제			○	×
외국납부 세액공제			○	○
월세 세액공제			○	×

□ 인적공제

1. 인적공제 대상 판정시기 및 공제방법

1) 판정시기

인적공제 대상자 해당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여 판정한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하여는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하여 판정하며, 주소의 국외 이전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출국일이 과세기간종료일이므로 출국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여 판정한다.

2) 공제방법

(1) 원칙 : 근로자 신청주의 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1명의 거주자만이 받을 수 있다.
(2) 둘 이상의 거주자가 공제대상 가족을 서로 중복하여 공제 신청한 경우
① 배우자 :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더라도, 근로자의 공제대상 배우자공제로 신청한다.
② 부양가족 : 직전연도에 기본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하며, 직전연도에 기본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한다.

2. 기본공제

1) 기본공제 요건 요약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명당 연 150만원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table>
<tr><th>구분</th><th>나이(연령)요건</th><th>생계요건</th><th>소득요건</th></tr>
<tr><td>근로자 본인</td><td>없음</td><td rowspan="3">없음</td><td>없음</td></tr>
<tr><td>배우자</td><td>없음</td><td rowspan="6">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td></tr>
<tr><td>직계비속 · 입양자</td><td>만 20세 이하
(2005.01.01.이후 출생)</td></tr>
<tr><td>장애인 직계비속
(입양자 포함)의
장애인 배우자</td><td>없음</td><td>없음</td></tr>
<tr><td>직계존속</td><td>만 60세 이상
(1965.12.31.이전 출생)</td><td>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주거형편상 별거허용)</td></tr>
<tr><td>형제자매
기초수급자
위탁아동</td><td>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위탁아동 만18세 미만,
2007.01.02 이후 출생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
만 20세 이하 포함)
기초수급자 없음</td><td>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취학, 질병, 근무, 사업상 형편에 따른 일시퇴거 인정)</td></tr>
</table>

2) 가족요건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가족요건)이란 근로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의 동거가족 중 관계코드를 부여할 수 있는 동거가족을 말한다.

구분	관계코드	구분	관계코드	구분	관계코드
본인	0	직계존속	1	배우자의 직계존속	2
배우자	3	직계비속 (자녀·입양자)	4	직계비속 (코드 4 제외)	5
형제자매	6	수급자	7	위탁아동	8

☞ 관계코드 "5"는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직게비속 배우자의 관계코드 이다.

(1) 기본공제대상 배우자의 범위

거주자와 연말 현재 법률혼 상태에 있는 배우자가 공제대상이다.
따라서 이혼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구 분	공제대상 여부
•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
• 사실혼 관계(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있는 배우자	×
• 당해 연도 중 이혼한 경우	×
• 당해 연도 중 사망한 경우	○
• 당해 연도 중 재혼한 배우자 (법률혼)	○

(2)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의 범위

직계비속이란 자녀(아들,딸), 입양자,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를 말한다.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 며느리)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 등)도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구 분		공제대상여부
근로자 본인의 출생 자녀	법률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종전배우자와 (법률)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	○
	종전 배우자와 사실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	×
당해 연도에 사망한 자녀 (당해 연도에 출생하여 사망한 경우 포함)		○
자녀의 아들, 딸(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
자녀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자녀 및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
	상기 이외의 경우	×

(3) 기본공제대상 직계존속의 범위

① 직계존속이란 거주자 본인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및 생부와 생모, 계부와 계모를 말한다. 즉,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등)뿐만 아니라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로서 혼인(사실혼제외)중임이 증명되는 자를 포함한다.

②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에 거주하는 직계존속 또는 근로자 본인의 외국인 배우자의 본국 거주 직계존속을 실제 부양하고 있는 경우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한다.

구 분		공제대상 여부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 이혼한 배우자의 직계존속		×
본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근로자 본인이 재혼하지 않는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	○
	근로자 본인이 재혼한 경우, 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	×
	근로자 본인이 재혼한 경우, 재혼한 배우자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이 당해 연도에 사망한 경우		○
직계존속이 이혼한 경우(이혼하여 재가한 부모포함)		○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법률혼관계에 있는 계부, 계모	○
	사실혼관계에 있는 계부, 계모	×

(4) 기본공제대상 형제자매의 범위

형제자매에는 근로자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포함하나,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형수 등)과 자녀(조카)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하지 않는다.

구 분		공제대상 여부
일반적인 경우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의 연도 중 사망한 형제자매	○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입양된 경우 그 양가와 생가의 형제자매		○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와 그 자녀(조카)		×

(5) 기초수급자 및 위탁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권자 및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을 말한다.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기간을 포함한다.

3) 생계요건

(1) 원칙 : 주민등록표등본상의 동거가족

거주자 본인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거주자 본인의 소득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표등본상의 동거가족이어야 한다. 단, 거주자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입양자는 주소 또는 거소를 달리 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2) 특례 : 주거형편상 별거 또는 일시퇴거 특례

① 주거형평상 별거

주거형편상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부모 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다른 형제자매 등이 해당 직계존속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아야 한다.

② 일시퇴거 특례

근로자 본인 등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직계비속, 입양자 제외)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4) 나이요건

해당 과세기간 중에 법적요건의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 나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장애인인 경우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배우자	직계비속 (입양자 포함)	직계존속	형제자매	기초 수급자	위탁아동
없음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없음	만 18세 미만
-	2005.01.01이후 출생자	1965.12.31이 전 출생자	2005.01.01.이후 또 는 1965.12.31이전 출생자	-	2007.01.02.이후 출생자

5) 소득금액 요건

거주자의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 이어야 한다.

연간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퇴직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 ≤ 연100만원

(1) 소득금액

연간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에 벌어들인 총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과세 소득 및 분리과세 소득(일용근로소득 등 포함)을 제외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금액 = 소득총액 – 비과세소득 – 분리과세대상소득 - 필요경비

(2) 연간 소득금액요건 판정기준

① 배우자,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신청이 가능한다.**

② **2개 이상의 복수소득(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이 있는** 배우자,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소득금액(비과세,분리과세소득,필요경비 제외)을 모두 합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3) 소득금액요건 적용 시 주의할 점

①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등 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기준은 적용하지 않고 각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예)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2025.3월에 퇴직하면서 퇴직금 100만원 수령하였고,
2025.1월~ 3월까지 받은 총급여액은 300만원인 경우 기본공제신청 불가함.
연간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90만원 (300만원 – (300만원 × 70%))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퇴직금 = 퇴직소득금액) = 190만원

②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사업소득자인 경우

사업소득자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신고한 신고서를 통해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기본공제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③ 대학 등에서 받은 강사료 수입 등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이거나 또는 기타소득금액이 3백 만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기본공제신청이 가능하다. 단, 해당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동 기타소득에 대해서 5월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공제로 추징됨에 유의해야 한다.

④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월세수입금액과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한 금액이 2천 만원 이하이면서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해당 부양가족에 대해서 기본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1주택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원 초과) 보유자는 2천 만원 초과시 과세함) 그러나 상가임대소득인 경우에는 상가임대로 발생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임대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신청할 수 없다.

⑤ 2025년도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부동산 양도 시 신고한 양도소득금액(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받을 수 없다.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1세대 1주택 비과세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기본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⑥ 연금소득 생활자인 부모님 등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판단

공적, 사적연금별로 과세대상 연금소득계산방식이 상이하고 복잡하므로, 공적연금만 수령하는 경우에는 관할 공단에, 사적연금에서도 수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소득금액을 문의 및 확인하여 판단하도록 한다.

☞ 소득종류별 연간소득금액 요건 판단 예시

소득 구분	소득금액 요건 판단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소득금액요건을 충족한 경우	소득금액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일반 근로소득	▷소득금액 계산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 이외 타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일용 근로소득	▷소득금액 계산 = 소득제한 없음 ▷일용근로자의 일용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신청 가능)	
사업소득 (임대소득)	▷소득금액 계산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1주택(고가주택 제외)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작물재배업, 농가부업소득 등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2주택이상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2천만원 이하이면서 종합과세 신청한 경우
기타소득	▷소득금액 계산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비과세, 분리과세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매 건마다 5만원 이하로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 배당소득	▷소득금액 계산 = 총수입금액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연 2,0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 된 경우 ▷비과세, 분리과세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연 2,000만원 초과로 종합소득 신고대상인 경우 ▷100만원 초과의 국외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소득	▷소득금액 계산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사적연금액이 1,500만원 이하 ▷공적연금(국민,군인,공무원,사학연금) 수령금액 중 2002.1.1.이후 불입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연 516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분리과세 연금소득을 수령하는 경우	▷사적연금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적연금 수령금액 중 2002.1.1.이후 불입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연516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퇴직소득	▷소득금액 계산 = 퇴직금 총액 ▷퇴직금이 100만원 이하	▷퇴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	▷소득금액 계산 =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고가주택 제외)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 추가공제

추가공제는 해당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거주자에게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으로서, 기본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추가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다.

공제 종류	요건	공제금액
경로우대자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 신청한 배우자, 부양가족이 만 70세 이상 (1955.12.31.이전 출생)	1인당 100만원
장애인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1인당 200만원
부녀자	근로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이 3천 만원 이하인 근로자 본인(여성에 한함)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 ① 배우자(남편)가 있는 여성근로자 ② 배우자(남편)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 신청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근로소득금액만 있는 경우 총급여 41,470,588원 이하	연 50만원
한부모	근로자 본인(남,녀 불문)이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신청한 직계비속,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1) 경로우대자 공제

(1) 거주자 본인이 경로우대자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도 경로우대자 공제가능

(2) 기본공제대상자가 1인이 경로우대자 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중복공제 가능

(3) 기본공제 대상자 중 경로우대자가 당해 연도에 사망한 경우 당해 연도에 공제 가능

2) 장애인 공제

(1)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 배우자,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추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장애인의 범위

①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및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은 장애아동

-. 장애미등록자인 만 6세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경우도 포함되나, 검사를 받은 해당 병원 등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서식)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자 : 고엽제후유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

③ 중증질환, 희귀난청성 질환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부상으로 인해 중단없이 주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자로서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 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 하는 자

※ 유의사항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중증진료 등록확인증'은 세법상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장애인공제 증명서류로 적합하지 않음.

2)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 발급받은 장기요양 인정서는 장애인 증명서류에 해당하지 않음.

3) 부녀자 공제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이 3천 만원 이하(총급여액 41,470,588원 이하를 말함)인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주민등록표등본상의 세대주를 말함)인 경우에는 연 50만원을 공제한다.
배우자 유무에 따른 부녀자공제 공제요건 적용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소득금액요건	세대주 여부	부양가족유무
배우자가 있는 여성	○	×	×
배우자가 없는 여성	○	○	○

4) 한부모가족 공제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사람(남,녀 불문)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을 공제한다.

☞ **한부모공제 vs 부녀자 공제**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 본인		배우자가 있는 근로자본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를 기본공제 신청한 경우	이외의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신청한 경우	
한부모 가족 공제	부녀자 공제	
연 100만원	연 50만원	

4. 소득공제 증빙서류

※ 이전에 동일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공제대상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변동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

구 분		제출서류
기본공제	배우자 부양가족	주민등록표등본 or 가족관계증명서 입양자 : 입양사실확인서 or 입양증명서 입양자 : 입양관계증명서 위탁아동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추가공제	경로우대	주민등록표등본 or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or 장애인증명서 상이자 : 상이자증명서 or 국가유공자증(국가보훈처) 중증환자 : 장애인증명서(해당 의료기관) 장애아동복지법에 따른 장애아동 :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
	부녀자	주민등록표등본 (※ 기혼자 해당없음)
	한부모	주민등록표등본 or 가족관계증명서

□ 연금보험료 공제

1. 공제대상

국민연금 및 공무원 연금 등 공적연금에 근로자 **본인명의로 납입한** 기여금(또는 부담금)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연금보험료로 전액 공제한다.

공제대상		공제한도
국민연금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지역가입자 납부분 포함)	전액공제
공적연금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2. 공제시기

해당 연도에 납부한 보험료를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공제대상	공제시기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급여에서 원천징수 한 연도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연금보험료	납부한 연도
국민연금법에 의한 추가, 미납보험료	납부한 연도
소급납부 한 연금보험료	납부한 연도

※ 휴직기간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복직한 연도에 납부한 금액은 휴직한 연도가 아닌 납부한 연도(복직한 연도)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아야 한다.

3. 연금보험료 공제순서

1) 소득공제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또는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한도로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연금보험료 과세체계 특징을 고려하여, 타공제보다 후순위로 공제받는 것이 근로소득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 연금보험료 과세체계
-. 소득공제 받은 금액 → 연금수령시 연금소득 과세
-. 소득공제를 받지 않음 금액 → 연금수령시 과세 제외

☞ 소득공제항목 공제순서
① 인적공제(기본,추가공제) → ② 특별소득공제 (보험료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이월액)) →
③ 그 밖의 소득공제(개인연금, 주택마련저축, 투자조합출자 등,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공제) →
④ 연금보험료공제

□ 보험료 공제

1. 공제대상 보험료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라 근로제공 기간 내에 **근로자 본인 명의로 납부한 보험료(본인부담분)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따라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건강보험료 등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공제대상 보험료	공제금액
국민건강, 고용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 본인 명의로 부담하는 보험료	보험료 전액

2. 공제시기

근로자가 근로제공기간에 납부한 금액은 해당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구분	공제시기
건강보험료 정산차액을 납부한 경우	납부(정산)한 연도
전년분 급여에서 원천징수 한 보험료를 당해 연도에 납부한 경우	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연도

3. 공제 시 유의할 점

1) 근로자가 근로제공기간에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공제대상이다.
2) 퇴사 또는 입사 전 등 근로제공기간 이외에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3)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제외대상인 외국인이 외국보험회사에 납부한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 주택자금공제

1. 유형별 주거지원제도

구분		공제대상자	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공제		연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주의 배우자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주택임차 차입금원 리금 소득 공제	금융기관	연말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오피스텔 포함)임차를 위한 전세, 월세보증금 대출금 원금과 이자상환액
	개인간	연말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5천 만원 이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공제		차입당시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세대주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월세액 세액공제액		연말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8천 만원 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

☞ 주택마련저축공제를 제외하고 근로자 본인이 세대원인 경우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 명의의 주택관련 공제를 본인이 신청 가능

1) 세대와 세대주

(1)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및 형제자매를 포함하며, 거주자와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2) "세대주" 여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 상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대주는 단독세대주를 포함한다.

2)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 여부 판단

(1)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이 소유한 주택을 포함한 보유주택수로 계산한다. 보유주택 수에는 무허가주택, 임대주택 등도 포함되는 것이며, 다가구주택의 경우 전체를 1주택(단, 구분등기 된 경우에는 가구당 각각 1주택으로 봄)으로 하여 주택보유 수를 판단함.

3) 공제대상 주택의 국민주택의 범위

(1) "국민주택규모"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 미터 이하인 주택(『수도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다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2. 주택자금공제 통합 공제한도

주택자금공제 통합공제한도란
아래의 공제항목별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통합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여 통합공제한도 내 금액만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table>
<tr><th>구분</th><th>공제금액</th><th colspan="2">통합공제한도</th></tr>
<tr><td>주택마련저축</td><td>① Min (납입액, 연300만원×40%)</td><td rowspan="2">Min { (①+②), 연400만원}</td><td rowspan="2">Min {(①+②+③),
(연600만원~연2,000만원)}</td></tr>
<tr><td>주택임차
차입금</td><td>② Min (원리금상환액× 40%,
연400만원)</td></tr>
<tr><td>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td><td>③ Min (이자상환액,
연 600만원~ 2,000만원)</td><td colspan="2">차입시기에 따라 아래의 통합공제한도 적용

1) 2011.12.31. 이전 차입한 차입금

<table>
<tr><th>상환기간
10년~15년 주1</th><th>상환기간
15년 ~29년</th><th>상환기간 30년
이상</th></tr>
<tr><td>연600만원</td><td>연1,000만원</td><td>연1,500만원</td></tr>
</table>

주1) 2003.12.31.이전 차입금에 한함.

2) 2011.12.31. 이전 차입한 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table>
<tr><th>고정금리 and 비거치식</th><th>고정금리 or 비거치식</th></tr>
<tr><td>연 2,000만원</td><td>연 1,800만원</td></tr>
</table>

3) 2012.1.1.이후 차입한 차입금

<table>
<tr><th colspan="3">상환기간이 15년 이상</th><th>상환기간
10년~15년</th></tr>
<tr><td>고정금리
&비거치식</td><td>고정금리
or 비거치식</td><td>기타대출</td><td>고정금리
or 비거치식</td></tr>
<tr><td>연2,000만원</td><td>연1,800만원</td><td>연800만원</td><td>연600만원</td></tr>
</table>
</td></tr>
</table>

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1) 공제요건

공제요건	금융기관 차입분	거주자로부터의 차입금
세대주 요건	연말 현재 무주택세대주 또는 세대원*주1* (단독세대주 포함) ※ 2021년 개정 외국인 포함	① 연말 현재 무주택세대주 또는 세대원 ②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주2* ※ 2021년 개정 외국인 포함
주택요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3* , 오피스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오피스텔
차입금 요건	①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3개월 이내 차입*주4* ② 대출기관*주5*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	①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1개월 이내 차입 ② 3.1% 이상의 이자율로 차입

(주1) 2014.1.1 이후 차입금부터는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세대원도 공제 가능

(주2) 대부업 등을 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 2010.1.1이후 최초 차입하여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주3) 법 소정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은 100m^2 을 말하며 이외 지역은 85m^2 를 의미한다.

(주4) 차입금 요건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차입금

(2) 다른 전세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이사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차입금

(3) 종전 차입금을 다른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상환하는 대환대출의 경우에는 최초 차입한 차입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5) 법 소정 대출기관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3)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4)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5)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6)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7)보험회사

(8) 우체국 (9) 주택도시기금 (10) 한국주택 금융공사 (11) 여신전문금융회사

(12)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에 따른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법 소정 대출기관 소속 근로자가 해당 대출기관으로부터 소속 근로자만이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임차 차입금을 저리로 대출받아 해당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다. (법규소득2014-112. 2014.6.2)

2) 공제금액

(1) 당해 연도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 다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금액과 주택마련저축공제 합계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 합계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납입액의 순서로 공제한다. (법규소득 2010-395)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1) 기본사항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내 용</th></tr>
<tr><td colspan="2">공제
대상자</td><td>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요건을 갖춘 경우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세대주
-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
※ 2021년 개정 외국인 포함</td></tr>
<tr><td colspan="2">공제한도</td><td>① 2011.12.31. 이전 차입분
10년~15년 미만(2003.12.31 이전 차입금에 한함) : 600만원
15년 이상 : 1,000만원
30년 이상 : 1,500만원
② 2011.12.31. 이전 차입분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 이자지급 방식 or 비거치식 원금 상환방식 : 1,800만원
고정금리 이자지급 방식 and 비거치식 원금 상환방식 : 2,000만원
③ 2012.1.1.이후 차입분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 and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 2,0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 1,8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상기 이외의 기타대출 : 800만원
상환기간 10년~15년 미만,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 600만원</td></tr>
<tr><td rowspan="2">요
건
(주1)</td><td>주택</td><td>취득 당시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로서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인 주택
(규모 제한없음)</td></tr>
<tr><td>차입금
(주2)</td><td>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①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주3
②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차입금일 것주4
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소유자일 것</td></tr>
<tr><td colspan="2">공제배제</td><td>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td></tr>
</table>

(주1)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당해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주2)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취득으로 인하여 승계 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
(주3) 당해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주택취득과 함께 인수하는 경우 상환기간은 당해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함
(주4) 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나, 주택 양수인이 주택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차입금은 공제 불가

2) 공제대상자 요건

(1) 근로자 본인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차입한 경우로서 연말 현재 세대주이어야 한다. 근로자 본인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차입하였으나, 근로자 본인이 세대원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본인이 실제 거주하고,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세대원인 근로자 본인도 공제받을 수 있다.

(2)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3) 주택요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 및 고시원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다.

	취득시점	취득이후
'13.12.31 이전 차입	주택구입시 무주택 세대인 상태에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을 취득할 것	(연중) 2주택 이상 보유기간이 3개월 이하 (주1) (연말 현재) 연말 현재 1주택 보유
'14.1.1 이후 차입	주택구입시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세대인 상태에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것	(연말현재) 연말 현재 1주택 보유
'19.1.1 이후 차입	주택구입시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세대인 상태에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것	(연말현재) 연말 현재 1주택 보유
'24.1.1 이후 차입	주택구입시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세대인 상태에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것	(연말현재) 연말 현재 1주택 보유

(주1) 13.12.31이전 차입금으로서 '06.1.1.이후 주택을 추가취득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연도에는 공제 불가('08.1.1.이후 상환분부터 적용).
단 , '13.12.31.이전 차입금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소득공제를 받아오다가 '14년 이후 주택을 추가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연도 중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연말 현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소법부칙 제12169호 2014.01.01. 제19조)

※ 무주택세대, 1주택 보유세대 및 연말현재 1주택 보유 판단 시 보유주택 수 산정

근로자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상 동거가족의 보유주택을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이나 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상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별도세대구성) 배우자 소유의 주택을 포함하여 판단한다.

부모님이 실제로는 따로 살고 있으나 근로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모님 보유주택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4) 차입금 요건

(1) 다음 ①, ②, ③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한다.

① 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
- ☞ 조특법 98조의 3에 의한 지방 미분양 주택 등을 2009.2.12부터 2010.2.11까지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에서 차입한 주택저당차입금은 상환기간 5년 이상이면 ①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 2003.12.31이전 차입금의 경우 상환기간 10년 이상의 경우와 2015.01.01 이후 차입금으로서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이고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의 경우를 포함

② 주택소유권이전등기·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할 것
- ☞ 2000.10.31 이전 차입한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는 "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 차입"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 ☞ 타인 명의 주택이나 타인 명의 차입금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을 근로자 본인이 공제 받을 수는 없다.

※ 상환기간 중 차입금의 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여 앞의 ①,②,③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당해 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원천세과 -488, 2009.6.4)

(2) 『양수인이 전소유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인수하는 경우』의 요건 적용방법

① 요건은 충족하여야 하나, 전소유자가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상환기간을 계산한다.
②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 양수인의 주택 취득 당시 주택 기준시가가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않는다.(영112⑩,⑭)
③ 요건은 충족하여야 한다.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과 주택의 명의에 따른 본인공제여부

상황	공제여부
근로자 명의 주택 + 근로자 명의 차입금	○
근로자 명의 주택 + 배우자 명의 차입금	×
배우자 명의 주택 + 근로자 명의 차입금	×
공동명의 주택 + 근로자 명의 차입금	○
근로자 명의 주택 + 공동명의 차입금	△
공동명의 주택 + 공동명의 차입금	△

5) 공제금액

(1) 당해 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 다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금액 및 주택마련저축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2,000만원(저당차입금 상환기간이 30년 이상이면 연 1,5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6) 주택의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요건 적용기준

(1)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요건 적용 시 기준시가는 주택의 기준시가
즉,「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의미
☞ 공동주택가격열람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가능

(2) 다만, 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에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
☞ 2008.1.1 이후 최초로 신규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2007.12.31 이전 차입분의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개별공시가격 없는 주택의 가격평가신청서(재산제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4호 서식) 」를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법99 ①, 영164 ⑪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7) 주택규모·시가 개정내역

차입금의 차입시기	주택요건	
	주택규모	취득 당시 기준시가
2005.12.31 이전	국민주택규모주택 [단, 오피스텔은 제외]	관계없음
2006.1.1 ~ 2013.12.31.		3억 원 이하일 것
2014.1.1 이후	관계없음	4억 원 이하일 것
2019.1.1 이후		5억 원 이하일 것
2024.1.1 이후		6억원 이하일 것

8) 보유 주택 수 개정내역

차입금의 차입시기	주택요건	
	취득 당시	취득 이후
2005.12.31 이전	주택 수 관계 없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을 것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 2) 해당 과세기간 중 2주택 이상 보유기간이 3개월을 초과
2006.1.1 ~ 2013.12.31.	무주택	
2014.1.1 이후	무주택 또는 1주택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

※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연말 현재 1주택자에 해당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소법부칙 제12169호 2014.1.1. 제19조)

9) 주택분양권에 대한 차입금

(1) 공제요건

① 세대주 요건

분양권 등 취득 당시부터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한다.

② 분양권 등 가격요건

아래와 같이 산정된 주택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의 가격이 6억원('13.12.31.이전 3억원, `20.12.31.이전 4억원, `23.12.31이전 5억원)이하 이어야 한다.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가격산정기준
주택분양권		분양가격
조합원입주권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③ 차입금요건

주택분양권 등을 취득하기 위해 금융기관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조건으로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일로부터 소유권 보존등기일까지 당해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2) 공제적용배제

주택분양권을 2개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특례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대환 (금융기관 내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차입금 이전)

① 당초 공제요건을 모두 충족 한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해당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전액 상환하게 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새로이 설정하는 형태로 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여부를 판단한다.

③ 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기존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한다.

소득공제 대상액 = 당해연도 이자상환액 × 기존차입금 원금잔액 / 이전 당시 차입한 금액

(2) 상환기간 연장 또는 대환방식으로 단기차입금을 장기차입금으로 전환

① 주택소유자와 채무자가 본인으로서 주택소유권이전일(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상환기간 15년 미만의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으로 연장하거나,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새로이 설정하고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의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전환, 대환)한 경우를 말한다.

② 상환기간 연장,신규 차입 당시의 주택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이어야 한다.

③ 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기존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한다.

소득공제 대상액 = 당해연도 이자상환액 × 기존차입금 원금잔액 / 이전 당시 차입한 금액

5. 주택마련저축공제

1) 공제대상 및 공제요건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의 주거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table>
<tr><th>구분</th><th>세부내용</th></tr>
<tr><td>공제대상자</td><td>1) 총급여액이 7천 만원 이하
2) 연말 현재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주의 배우자
3) 본인 명의의 주택마련저축 상품을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td></tr>
<tr><td>공제대상
저축의
범위</td><td>
<table>
<tr><th colspan="2">주택마련저축</th><th>공제요건</th></tr>
<tr><td rowspan="2">청약저축</td><td>2009.12.31.
이전 가입분</td><td>연말 현재 세대주로서 연중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1) 국민주택 1채 보유</td></tr>
<tr><td>2010.01.01.
이후 가입분</td><td>연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td></tr>
<tr><td colspan="2">주택청약종합저축</td><td>연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주의 배우자</td></tr>
<tr><td colspan="2">근로자주택마련저축 주2)</td><td>연말 현재 세대주로서, 연중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1채 보유</td></tr>
</table>
주1) 2005.12.31.이전 가입분은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단 2008.1.1.이후 주택취득으로 1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요건 적용
주2) 법률 제 7030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부칙 제 2조에 따라 폐지(2004.03.01)
</td></tr>
<tr><td>공제금액</td><td>
<table>
<tr><th>구 분</th><th>공제한도</th><th>공제금액</th></tr>
<tr><td>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 만)</td><td>연 300만원</td><td rowspan="2">공제한도 내
금액의 40%</td></tr>
<tr><td>근로자주택마련저축</td><td>월 15만원</td></tr>
</table>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자는 2014.12.31.이전 가입자에 한하여 2017.12.31까지 연 120만원을 한도로 공제해 주었으나, 2018.1.1.이후 납입분부터는 공제불가
</td></tr>
</table>

□ 개인연금저축

1. 공제대상자 및 공제요건

1) 2000.12.31.일 이전의 개인연금저축에 본인명의로 가입한 거주자로서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일정 요건을 갖춘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로 한다.

2)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에 둘다 가입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별개로 적용하여 각각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2. 공제금액

소득공제액 = MIN [개인연금저축납입액×40%, 72만원]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자는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대표자가 된다.

<table>
<tr><th>구 분</th><th>세 부 내 역</th></tr>
<tr><td>공제대상자</td><td>2015.12.31. 이전 가입한 임직원
2016.1.1.이후 가입자 중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의 법인대표자</td></tr>
<tr><td>공제금액</td><td>아래의 공제금액을 근로소득금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공제금액 = Min{해당연도 공제부금 납부액, 공제한도(연200만원~600만원)}
<table>
<tr><th>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th><th>공제한도</th></tr>
<tr><td>4천만원 이하</td><td>600만원</td></tr>
<tr><td>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td><td>500만원</td></tr>
<tr><td>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td><td>400만원</td></tr>
<tr><td>1억원 초과</td><td>200만원</td></tr>
</table>
단, '16.1.1.이후 가입자는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함이 원칙이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법인대표자에 한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임.</td></tr>
<tr><td>제출서류</td><td>공제부금납입증명서 (동 증명서를 제출한 다음연도부터는 통장사본도 가능)</td></tr>
<tr><td>수령 시 과세</td><td>2015.12.31.이전 가입분 : 이자소득세 과세 (운용수익)
2016.1.1. 이후 가입분 : 퇴직소득세 과세 (소득공제 받은 부금과 운용수익)</td></tr>
<tr><td>중도해지</td><td>폐업등 공제부금 지급사유 발생이전에 공제부금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기타 소득 = 해지환급금 -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
단, 2017.11.이후 해지하는 분부터는 해지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td></tr>
</table>

□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

1. 공제대상 및 공제요건

벤처기업 등의 투자재원의 원활한 조달과 확대를 위해 거주자 개인이 투자조합 등에 직접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 거주자에 대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금액의 10%~10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table>
<tr><th>공제요건</th><th>세부내용</th></tr>
<tr><td>공제대상자</td><td>투자조합 등에 직접 출자 또는 투자한 거주자</td></tr>
<tr><td>출자, 투자의 범위</td><td>다음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이어야 한다.
<table>
<tr><th>공제대상 출자 또는 투자</th><th>공제금액</th><th>공제한도</th></tr>
<tr><td>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 사업투자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
②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
③ 창업, 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에 투자하는 경우
④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출자</td><td>출자, 투자금액의 10%</td><td rowspan="2">종합소득금액의 50%</td></tr>
<tr><td>④ 개인투자조합(Angel Capital) 출자금액을 동 조합이 출자일의 다음연도 말까지 벤처기업에 투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에 투자한 경우
⑤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
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 지분증권에 투자</td><td>출, 투자금액의 30%~100% 주1)</td></tr>
</table>
주1) 개인이 벤처기업·벤처조합에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율
<table>
<tr><th>투자연도</th><th colspan="2">공제율</th></tr>
<tr><td rowspan="3">2021년 이후 투자분</td><td>3000만원 이하</td><td>100%</td></tr>
<tr><td>3000만원~5000만원 이하</td><td>70%</td></tr>
<tr><td>5000만원 초과</td><td>30%</td></tr>
</table>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한다.</td></tr>
<tr><td>공제시기</td><td>1) 2020.1.1 이후 투자분은 출자·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공제가 원칙이나, 출자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선택하여 1과세연도에 공제가능
2) 하나의(1회의) 투자금액을 분할하여 여러 연도에 공제받을 수 없음.
3) 한해에 2회 이상 투자하는 경우 각투자분마다 과세연도를 선택하여 공제 가능</td></tr>
</table>

□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1. 공제대상 사용자범위

1) 근로제공기간에 근로소득자 본인과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는 배우자 및 그 직계존·비속(입양자 포함)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공제대상금액으로 한다.

사용자 범위	공제요건		
	생계요건	나이요건	소득금액요건
배우자	없음	없음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직계비속,입양자	없음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 (주거형편상 별거 또는 질병 요양의 일시퇴거 인정)		

2) 형제자매, 기초수급자, 위탁아동,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및 다른 부양가족의 기본공제를 적용 받는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대금지급자(결제자) 기준이 아닌 카드명의자 기준(사용자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맞벌이 배우자명의의 카드이용대금을 근로자 본인이 지급하더라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2. 신용카드 등 사용액 범위

1)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2)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전자화폐수단 등 사용액

3)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3.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소득세법상 소득,세액공제와의 중복공제

구 분		소득,세액공제 적용여부	
		소득,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연금보험료		○	×
보험료		○	×
의료비		○	○
기부금		○	×
교육비	학원,체육시설수강료	Δ	○
	발달재활기관에 지출하는 장애인재활특수교육비	○	○
	교복구입비	○	○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

다음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구 분	사용내용
외국에서 사용한 경우 등	• 외국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 • 국외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 사용금액
회사경비로 사용한 경우 등	• 회사경비를 근로자 신용카드로 지출한 금액 • 종업원이 사용자로 지정된 법인명의신용카드 사용금액
비정상적으로 사용한 경우	• 가장거래 또는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거래한 금액 • 다른 카드가맹점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결제된 금액
보험료 사용액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료 및 각종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군인공제회 등의 공제료
교육비공제 사용액	• 교육비 공제대상 수업료, 보육비용 등의 사용액(이중공제 방지)
공과금 등	•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이용료 포함), 아파트관리비, 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이용료 포함), 및 고속도로통행료
자동차 구입비용	• 신규 자동차 구입비용 (중고자동차는 제외) ※ 2017.1.1.이후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동 구입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여 공제
유가증권구입	• 상품권 등 구입비용
자동차 리스료	•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 대여 리스료 (자동차 렌트료 포함) ※ 공기청정기, 정수기렌탈료는 공제가능
재산구입비용	•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취·등록세가 부과되는 발코니 확장공사비 등
국가 등에 지급하는 수수료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 및 수수료 ※ 의료기관, 보건소이용료, 우정사업조직의 소포우편물 비용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실내수영장 이용료, 경기장 사용료, 행정자산 임대료는 공제가능
금융 수수료	•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기부금	• 신용카드 등으로 결재하여 기부하는 기부금
월세액	•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이중공제 방지)
면세점 사용금액	• 관세법에 따른 보세판매장,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5. 공제시기

당해연도 (1.1.~12.31)에 사용한 금액을 해당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단, 할부로 구입한 경우에는 구입일이(카드 사용일자 기준) 속하는 해당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6. 공제금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은 1)일반 신용카드 등 공제금액과 2)추가공제금액의 합계액으로 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소득공제 대상금액은 총급여액 25%의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하여야 한다.

1) 일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 Min ((1)공제가능금액, (2)공제한도)

<table>
<tr><th>구 분</th><th>계산식</th></tr>
<tr><td>(1)
공제가능
금액</td><td>☞ 공제가능대상금액 = 공제대상금액(1) - 공제제외금액(2) + 소비증가분 공제금액(3)
(1) 공제대상금액 : 아래와 같이 계산된 금액 합계액
① 전통시장 사용금액 × 40%
② 대중교통 사용금액 × 40%
③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의 문화체육 사용액 × 30%
④ 직불, 현금영수증, 제로페이 사용금액(①,②,③사용분 제외) × 30%
⑤ 신용카드 사용금액(①,②,③사용분 제외) ×15%

(2) 공제제외금액
(1) 최저사용금액 ≤ ⑤사용금액 이면 → 최저사용금액×15%
(2) ⑤사용액 < 최저사용금액 ≤ ⑤사용액+④사용액+③사용액 이면
→ ⑤사용액×15% + (최저사용금액 - ⑤사용액)×30%
(3) (⑤+④+③)사용액 < 최저사용금액 ≤ (⑤+④+③+②+①)사용액 이면
→ ⑤사용액×15% + (④사용액+③사용액)×30%
+ (최저사용금액 - ⑤사용액 - ④사용액 - ③사용액)×40%</td></tr>
<tr><td>(2)
공제한도</td><td>상기의 공제가능금액은 아래의 총급여액 수준별 공제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table>
<tr><th>총급여액</th><th>공제한도</th></tr>
<tr><td>7천만원 이하</td><td>연300만원</td></tr>
<tr><td>7천만원 초과</td><td>연 250만원</td></tr>
</table></td></tr>
</table>

2) 추가공제금액

『1) 일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 계산시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 금액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추가공제한다.

☞공제한도 초과금액(한도초과금액) = 공제가능금액 – 공제한도금액

구분	추가공제금액 계신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Min [한도초과금액, (도서공연등 사용금액×30% + 전통시장 사용금액 ×40% + 대중교통 이용분×40%), 한도300만원]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Min [한도초과금액, (전통시장 사용금액×40% + 대중교통 이용분×40%}, 한도200만원]

□ 우리사주출연금 소득공제

1) 공제대상자

(1)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관계회사의 근로자 포함)

(2) 관계회사의 근로자가 지배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지배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 후 출자한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2) 소득공제 범위 및 공제시기

(1)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2) 출연한 해당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3) 공제금액

공제금액 = Min { 당해 연도 출연금액, 400만원(벤처기업 등 1,500만원) }

4) 제출서류

우리사주조합이 발행하는 우리사주조합출연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1. 소득공제 요건

2025년 12월 31일까지 매출액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에 불구하고 임금삭감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임금 삭감액의 50%를 소득공제 해주는 제도이다.

공제요건	세부내용
공제대상자	고용유지중소기업 또는 위기지역 내 중견기업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고용유지 중소기업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고용유지중소기업)이어야 한다. ①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 ②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는 경우 ③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전년대비 감소한 경우
공제금액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소득공제 대상금액 = (직전연도 근로자의 연간임금총액-당해연도 근로자의 연간임금총액)×50%

2. 소득공제 신청시 제출서류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에 사업주와 근로자대표간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1. 의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제 요건을 갖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가입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 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 공제요건

1)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가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 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 것
2) 공제신청 한 해당연도의 총급여액이 8천 만원 이하일 것
3) 자산총액의 40%이상을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위한 저축일 것
4)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저축 가입일부터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인출이 없을 것
5) 적립식저축으로서 1인당 연 600만원 이내에서 납입 할 것

3. 공제금액 및 한도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최고 240만원)을 공제

4. 중도해지 시 추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가입자가 해당 저축의 가입일로부터 5년 미만의 기간 내에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저축취급기관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총 누계액의 6% 곱한 금액을 추징하여 저축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한다.
단,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 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 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1. 의의

청년층의 건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증권사에서 운영하는 펀드에 장기로 가입하여 운영하면 그에 따른 세제지원 혜택으로 납입액의 일부분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이다.

2. 공제요건

1) 가입요건
   (1) 만 19~34세
   (2) 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3) 계약기간 3~5년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다만, 병역 이행 시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복무기간을 제외하여 가입요건을 판단
2) 공제금액 및 한도
   -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 가입중 총급여 8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700만원 초과 시 해당 과세기간은 소득공제 제외
4) 추징 :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인출·양도 시 감면세액 상당액(납입금액의 6%) 추징
   - 다만, 사망·해외이주·3개월 이상 장기요양 등의 경우 만기 전 해지 시 추징 배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1. 소득공제 종합한도 란

고소득자의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아래의 해당하는 소득공제항목의 공제금액 합계액이 2천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대상

주택자금(임차차입금,저당차입금),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신용카드,
창업투자조합 등 출자(벤처기업 직접 투자분 제외),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세율 및 산출세액

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과세표준	산출세액	
	누진공제법(누진공제방식)	가산법(누진세율방식)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6%	과세표준×6%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과세표준×15%-126만원	84만원+(과세표준-1,400만원)×15%
5,000만워 초과 ~ 8,800만원 이하	과세표준×24%-576만원	624만원+(과세표준-5,000만원)×24%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과세표준×35%-1,544만원	1,536만원+(과세표준-8,800만원)×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과세표준×38%-1,994만원	3,706만원+(과세표준-1억5천만원)×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과세표준×40%-2,594만원	9,406만원+(과세표준-3억원)×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과세표준x42%-3,594만원	1억7천4백6만원+(과세표준-5억원)x42%
10억원 초과	과세표준x45%-6,594만원	3억8천4백6만원+(과세표준-10억원)x45%

□ 근로소득세액공제

1. 세액공제액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세액공제금액	
	원칙	속산법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 × 55%	산출세액 × 55%
130만원 초과	715,000+(산출세액 - 130만원)×30%	산출세액 × 30% + 325,000

2. 세액공제액 한도액

총급여액	근로소득세액공제액 한도액
3,300만원 이하	74만원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Max [66만원, 74만원 - (총급여액 - 3,300만원) × 0.008]
7,000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	Max [50만원, 66만원 - (총급여액 - 7,000만원) × 0.5]
1억 2천만원 초과	Max [20만원, 50만원 - (총급여액 – 12,000만원) × 0.5]

□ 혼인세액공제

1. 공제대상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한 거주자에 대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구 분	내 용
적용대상자	해당연도에 혼인신고를 한 사람
공제금액	연 50만원

2. 공제시기 및 공제금액

사례1)	A(초혼)와 B(초혼)가 혼인신고를 한 경우	A와 B 모두 50만원씩 세액공제
사례2)	A(재혼)와 B(재혼)가 혼인신고를 한 경우 ※ A는 초혼시 혼인세액공제를 받은 적 있음 ※ B는 초혼시 혼인세액공제를 받은 적 없음	B만 50만원 세액공제

3. 공제배제

혼인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다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생애 1회 적용)

□ 자녀세액공제

1. 공제대상 자녀 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한다), 손자녀에 대해서는 다음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기본공제대상 자녀 수	공제세액
1명	연 25만원
2명	연 55만원
3명 이상	연 55만원 + (기본공제대상 자녀 인원수 - 2) × 40만원

※ 만 8세이상 자녀(손자녀)에 대하여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함.

2. 출생·입양자 세액공제

1) 기본공제대상자 중 2025년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한 자녀에 대해서는 다음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 공제세액

(1) 출산·입양한 자녀가 첫째이면 30만원

(2) 둘째이면 50만원

(3) 셋째 이상이면 70만원

□ 연금계좌세액공제

1. 공제대상

거주자가 본인명의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공제대상이다. 따라서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구 분		공제대상
연금계좌	연금저축	연금저축에 납입한 보험료 (2001.1.1.이후 가입분에 한함)
	퇴직연금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 (DC)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입한 본인부담금 (2)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급여에 납입한 본인부담금 (3)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납입한 금액

2. 공제대상금액과 세액공제

공제대상금액	공제대상금액 = (1) 일반공제 + (2) ISA전환 추가공제 (1) 일반 공제금액=Min(①+②), 연 900만원) ① Min(연금저축 납입액, 연 600만원) ② 퇴직연금 납입한 본인부담금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연금계좌 전환금액 추가공제 = Min(전환금액* × 10%, 연 300만원) * 전환금액이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만기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입금한 금액을 말함.
세액공제	세액공제액 = 공제대상 × 12%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는 15%)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연금계좌 전환금액에 대한 추가공제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을 전환금액이라고 하며, 전환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한다.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전환금액을 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3) ISA 전환금액을 포함하여 연금계좌의 공제한도를 적용하고, 공제한도 초과로 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이 남아 있는 경우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공제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면 ISA 전환금액에 대한 추가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 보험료 세액공제

1. 보험료 공제대상

공제구분	공제대상 보험료	공제한도
일반 보장성보험	기본공제대상자(본인 포함)를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종 피보험자 포함)로 하는 보장성 보험료로서 근로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연 100만원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	연 100만원

2. 공제대상 보험료

(1) 보장성 보험료

근로자 본인과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 포함)로 하는 보장성 보험료로서 근로자가 근로제공기간에 실제로 납부한 금액을 공제한다.

보장성보험료 공제대상 기본공제대상자는 생계요건, 나이요건, 소득금액요건을 충족한 배우자, 직계비속, 입양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기초수급자를 말한다.

공제대상인 경우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가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험료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보험료 • 연도 중 보험을 해약한 경우 납부한 보험료 공제가능 • 사용자가 대납한 보험료는 근로자 급여에 가산한 후 보험료공제 가능 • 해약환급금으로 순수보장부문의 보험료로 충당한 경우	•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보험료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보험료 • 출생 전 태아가 피보험자인 보험료 • 근로자가 리스회사에 리스료와 함께 지급하는 자동차 보험료 • 외국보험회사에 납부한 보험료

(2)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보험에 한함)에 가입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보장성보험료와는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3. 공제시기

근로자가 근로제공기간에 납부한 금액은 해당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4. 공제대상금액과 세액공제액

근로자가 해당연도에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와 공제한도(연100만원)중 작은 금액을 공제대상금액으로 하며, 해당 공제대상금액에 12%(장애인 전용보험의 경우 15%)의 세액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액으로 한다.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과 일반보장성 보험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공제한도를 적용

보험종류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1) 보장성 보험	Min (보험료납입액, 100만원)	공제대상금액 × 12%
(2)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Min (보험료납입액, 100만원)	공제대상금액 × 15%

5. 제출서류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 납입영수증(국세청 발급 소득 ,세액공제 증빙서류 제출가능)

※ 보험계약 유형에 따른 공제여부 판단

계약자	피보험자	공제여부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근로자 본인	O
	기본공제대상 배우자, 부양가족	O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배우자, 부양가족	×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배우자, 부양가족	근로자 본인	×
	기본공제대상 배우자, 부양가족	×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	×

※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가 상이한 경우 보험료공제 여부

맞벌이부부로서 근로자 본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주피보험자가 근로자 본인, 종피보험자가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 자녀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고 당해연도에 본인이 지급하는 보험료는 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함 (원천-268. 2012.05.15)

□ 의료비 세액공제

1. 공제대상자

1) 본인 및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 소득요건 제한 없음)인 배우자, 직계비속, 입양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기초수급자를 위해 근로제공기간에 의료비를 지출한 근로소득자

2) 근로자 본인이 기본공제를 신청한 부양가족뿐만 아니라 "나이 및 소득금액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부양가족에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대상이다.

공제대상자	생계요건	나이요건	소득금액요건
배우자	없음	없음	없음
직계비속, 입양자	없음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주거형편상 별거(직계존속에 한함) 또는 일시퇴거 인정)		
형제자매			
위탁아동			

공제대상인 경우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에 지출한 의료비 •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 기본공제대상자로서 당해 연도에 사망한 직계존속에 지출한 의료비	•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대한 의료비 •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 받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2. 공제대상 의료비

1) 진찰·진료·질병 예방을 위해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 조산의 업(業)을 하는 곳으로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2020년 부터 산후조리원을 포함)

※ 외국의 의료기관, 언어심리치료목적의 특수교육원 등은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대상인 경우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의료기관에 지출하는 식대, 응급환자 이송비용 등 -질병을 원인으로 유방절제수술 후 이를 재건하기 위한 수술비용 -보철, 틀니, 질병예방차원의 스케일링, 임플란트비용 및 치열교정비용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함) -불임으로 인한 인공수정을 위한 검사, 시술비 -의료기관에 지출한 시력교정, 근시교정시술비 -LASIK(레이저각막절제수술) 수술비용 -치료목적의 모발이식, 화상흉터제거 및 청각장애자의 귀성형 등의 성형수술 -제대혈 보관비용, 건강진단비 및 질병예방차원의 MRI -산후조리원(의료기관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 포함)에 지출하는 비용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치료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	• 응급환자이송업체의 응급처치료 및 환자이송료 • 외국소재 대학병원은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특수교육원 등에 장애인의 언어재활 또는 자폐증 치료를 위해 지출한 비용 • 간병인에 지급하는 간병비 •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2)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약사법 제2조에 다른 의약품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및 한약

3) 장애인보장구 구입 또는 임차비용

장애인 보장구를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의료기기상사 등에서 구입한 경우에도 공제대상이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장애인 보장구 구입은 장애인 의료비가 아닌 그 밖의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한다.

☞ ***장애인 보장구의 범위***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점자프린터,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보조기(팔,다리,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함),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 시스템, 목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물품(매트리스,쿠션 및 침대에 한함), 인공후두, 장애인용 기저귀, 텔레비전 자막수신기. 화면해설방송송수신기,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 확대기 및 전용음성독서기

4) 의사,치과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 임차비용

의사의 처방전으로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의료기기상사 등에서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임차한 비용

(1)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2) 상해 또는 장애의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3) 구조 또는 기능의 검사.대체 또는 변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4) 임신조절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5)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1인당 50만원 한도)

6)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이 아닌 기본공제대상자의 보청기구입비는 그 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에 해당

7) 노인장기요양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 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1) 수급자가 부담하는 다음의 재가 및 시설급여비용
①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 재가급여란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급여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함.
②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수급자가 부담하는 장기요양급여
☞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되므로 월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

8) 모자보건법에 따른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1) 미숙아
☞ 임신37주 미만의 출상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천500그램 미만인 영유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 37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

(2) 선천성이상아
☞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천상이상의 정도·발생빈도 또는 치료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정하는 선청성이상에 관한 질환이 있는 영유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
① 선천성이상으로 사망할 우려가 있는 영유아
② 선천성이상으로 기능적 장애가 현저한 영유아
③ 선천성이상으로 기능의 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제4호 라목에 따른 보조생식술(체내,체외인공수정을 포함)에 소요된 비용

☞ 난임시술비 유의사항

한도를 적용 받지 않는 난임시술비의 경우 국세청간소화서비스 자료에서 별도로 구분하여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아 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간소화서비스자료에서는 난임시술비를 포함한 해당 의료기관에 지출한 총금액만 기재되므로, 총지출액에서 난임시술비를 차감하여 기재하여야 함.

10) 산후조리원 비용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내

3. 공제대상금액과 세액공제액

1) 의료비 지출액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 중 난임시술비,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본인,장애인, 만65세 이상자, 건강보험산정특례자의 의료비는 공제한도 없이 전액 공제를, 그 밖의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연7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해주는데, 이를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

2) 단, 그 밖의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난임시술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본인, 장애인, 만 65세 이상자, 건강보험산정특례자의 의료비에서 차감하여 공제대상 금액을 계산한다.

3) 위 공제대상금액에서 세액공제율 15%(난임시술비 30%,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를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액으로 하여 해당연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의료비 구분	공제한도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①난임시술비	전액공제	A=①-(②+③+④이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할 경우 그 미달액)	A의 공제대상금액 × 30%
②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전액공제	B=②-(③+④이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할 경우 그 미달액)	B의 공제대상금액 × 20%
③본인, 만65세 이상자, 만6세 이하자, 장애인의료비, 건강보험산정특례자	전액공제	C=②-(④가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할 경우 그 미달액)	C의 공제대상금액 × 15%
④그 밖의 부양가족 의료비	연 700만원	D=Min{(③-실손의료보험금 - 총급여액 × 3%), 연700만원}	D의 공제대상금액 × 15%

4)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의료비 지출연도를 기준으로 공제대상 의료비에서 차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 중 이전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실손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반영한다.

(2) 과거연도에 해당하는 실손보험금은 해당 과거연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수정신고를 진행한다. (※ 2021.2.17 이후 수정신고부터 가산세 면제)

※ 건강보험산정특례자 해당 여부 확인방법

1) 건강보험산정특례자 :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결핵환자가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
2) 건강보험공단지사 또는 의료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료비영수증상 "환자구분"란에서 특례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지 않는 아래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1) 맞벌이 부부가 근로자 본인이 기본공제 신청한 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배우자가 지출한 경우
2)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건강생활유지비, 출산전진료비(고운맘카드 지원금)는 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님
3)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지원금은 당해연도 공제대상 의료비에서 차감함.
4) 해당연도에 미지급된 의료비는 지출한 연도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

퇴직 이후에 지출한 의료비와 취업이전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

1. 공제대상자

1) 근로자 본인과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중 배우자, 직계비속, 입양자, 형제자매, 위탁아동을 위해 근로제공기간에 교육비를 지출한 근로소득자

2) 나이를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부양가족에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가능하다.

3) 직계존속, 기초수급자의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공제 불가
직계존속, 기초수급자의 장애인재활특수교육비는 공제가능

공제대상자	생계요건	나이요건	소득금액요건
배우자	없음	없음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직계비속, 입양자	없음		
형제자매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 (학업,취학 등으로 인한 일시퇴거 인정)		
위탁아동			

2. 교육비의 범위

1) 국내일반 교육비

(1)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공제대상 교육기관	공제대상 교육비
•인허가 등록된 시설로서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보육료, 수강료, 수업료, 그밖의 공납금, 급식비(우유급식 포함), 방과후 수업료(특별활동비와 도서구입비 포함), 유치원종일반 운영비 등

☞ 미인가 시설인 선교원, 놀이방, 어린이집 등은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음.

☞ 학원 및 체육시설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월단위(1주 1회 이상)의 교습과정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함.

☞ 홈스쿨, 재능교육 등의 학습지교육은 학원, 체육시설의 수강료에 해당하지 않음.

☞ 초,중고, 대학생 등에 지출하는 학원, 체육시설 수강료는 공제받을 수 없음.

(2)초·중·고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공제대상 교육기관	공제대상 교육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위인정(고등학교 이하 학력인정기관) 평생교육시설 주1	•수업료, 입학금, 그 밖의 공납금(학교운영회비, 기성회비 등), 급식비(우유급식 포함), 교과서 구입비 •방과후 수업료(특별활동비와 도서구입비 포함) 주2 •중·고등학생의 교복,체육복 구입비(1인당 50만원) •현장학습비 (1인당 30만원)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의 경비를 말함) (현장학습비 (1인당 30만원) •수능시험 응시수수료 및 입학전형료

주2)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중고등학교 방과후 학교수업용 도서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방과후학교수업용 도서구입 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함.

(3) 대학생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직계비속 등이 "17.01.01.이후 한국장학재단 등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다.

공제대상 교육기관	공제대상 교육비
•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대학교 주1 • 전공대학 및 원격대학,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위취득 과정 주2	• 입학금, 수업료(계절학기 수업료 포함) 등

주1) 과학기술대학, 경찰대, 육해공군사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기능대학, 제주국제학교 등을 말함.

주2) 고등교육법 적용을 받지 않는 사이버대학, 대학부설 사회교육원, 평생교육원 등을 말함 (해당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문의확인)

(4) 근로자 본인만 인정되는 교육비

공제대상 교육기관	공제대상교육비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주1 • 대학 또는 대학원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 시간제 과정 주2	•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중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는 근로자수강지원금을 뺀 근로자 자비부담분 • 대학 또는 대학원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계절대학 교육과정(최고경영자과정 등)에 지출하는 교육비 • 대학원 및 시간제과정 교육비 • 든든학자금 등의 학자금대출금 상환액

주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 또는 승인을 받아 설치한 시설인 "공공직업 훈련시설"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직업훈련원, 직업전문학교 등의 시설인"지정직업훈련시설"로 구분되며, 공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기관 또는 노동부 직업훈련정보망에서 조회 확인 또는 문의

주2) 학점을 이수하기 위해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포함)에 시간제로 등록하여 대학의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것

2) 국외교육비

(1) 공제대상

구 분	국외교육비 공제대상	
국외근무자	근로자 본인과 국외에서 동거하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입양자, 형제자매에 지출한 교육비 주1	
국내근무자 주3	공제대상자 중 고등학생 이상	국외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공제 ☞2012.1.1. 이후 유학중인 자녀가 고등학생, 대학생인 경우에 국외유학자격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공제대상자 중 학생 이하	취학전 아동, 초·중학생인 경우 『국외유학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육비 공제가능

주1) 국외소재 대학원에 지출한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에 한해 공제가능

주2) 국내근무자의 유학자녀가 취학전아동, 초·중학생인 경우 아래 어느 하나의 『유학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①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 부칙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 유학을 떠날 당시 중학교 졸업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의 소유자

-. 교육장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②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 부칙에 따라 유학하는 자로 부모 모두와 함께 출국하여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 해외파견, 해외취업 등에 의해 전 가족이 외국으로 출국하여 국외에서 1년 이상 동거 후 부모 전부 또는 근로자만 귀국한 경우 포함)

주3) 연말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에 해당하여야 함.

(2) 공제대상 국외교육기관

우리나라 유치원, 초 · 중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국외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가 공제대상으로서, 대학원은 근로자 본인에 한하여 인정되며, 취학전 아동의 외국소재 어린이집, 학원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 수강료 등은 국외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니다.

(3) 교육비 적용환율

구 분	적용환율
국내에서 송금	해외 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
국외에서 직접납부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3) 장애인재활특수교육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나이와 연간소득금액에 상관없이 장애인인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입양자, 형제자매, 위탁아동, 직계존속 및 기초수급자를 위해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3) "(1)"과 "(2)"의 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4)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만 18세 미만(2000.1.2.이후 출생)인 지역 내에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음악치료, 미술치료, 언어치료, 놀이치료, 독서치료, 동작치료, 연극치료 등을 제공하는 센터를 말함)

3. 공제받지 못하는 교육비

구 분	공제받지 못하는 교육비(예시)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아닌 경우 등	•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처남(처제), 형제자매 교육비 • 직계존속의 교육비 (직계존속의 장애인 교육비는 공제대상임)
입사 전, 퇴직 후 지출한 경우 등	• 입사 전에 지출한 국내, 국외 교육비 • 퇴직 후 전 회사에서 받은 본인,자녀 학자금
비과세되는 학자금 등	• 소득세,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장학금 등 -. 재학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에서 받은 장학금 등 -.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비과세되는 학자금을 근무회사로부터 지원받아 교육비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거주자가 의무복무기간 불이행으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이를 반납한 경우의 교육비
공제대상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자녀 등 부양가족의 대학원 교육비 • 초중고등학생의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 비인가 교육시설 및 비인가 대한학교에 지출한 교육비 • 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수과정에 대한 수업료 • 백화점 문화센터, 사회복지관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기관에 지출한 수강료
정규교육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정규수업시간 이외의 외부강사의 실기지도비 (예능학교의 정규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실기지도비는 공제대상임) • 대학교에 납부하는 석박사 학위논문 심사료 • 어린이집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료 • 학교버스이용료, 기숙사비, 학생회비 등

4. 공제시기

구 분	공제시기
일반적인 경우	지출(납부)한 연도
초・중・고등학교 입학 전에 납부한 입학금	지출(납부)한 연도
대학교(원) 입학 전에 납부한 입학금	대학(원)생이 된 연도
재학 중 선납한 교육비	지출(선납)한 연도
근무의무기간 위반에 따른 비과세교육비 반납 시	교육비 공제 불가

5. 공제대상금액과 세액공제액

1) 당해연도에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로서 공제한도를 적용한 교육비
2) 해당 공제대상금액에 15%의 세액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교육비 세액공제액으로 하여 해당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대상자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근로자 본인	전액 공제	공제대상금액 × 15%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Min (교육비지출액, 1인당 연 300만원)	
대학생	Min (교육비지출액, 1인당 연 900만원)	
장애인특수교육비	전액 공제	

6. 제출서류

교육비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교육비납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교육비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공제신청 하여야 한다.

※ 든든학자금 등 학자금 대출금 원리금상환액 교육비 세액공제

1) 개요

'17.1.1.이후부터 근로자 본인이 대학학자금을 대출받아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면 학자금대출 상환원리금 전액을 교육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2016.12.31.이전 학자금 대출분	근로자 본인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출한 교육비를 직계존속 등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상환하고 있는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에 대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음
2017.1.1. 이후 학자금 대출분	(1) 근로자 본인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재학 중에는 직계존속 등이 공제를 받을 수 없고 (2) 근로자 본인이 취업이후 상환하는 경우에 동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에 대해 근로자 본인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2) 공제대상 학자금대출금의 범위

대출금의 상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공제대상 학자금대출의 범위	아래의 학자금 대출(등록금에 대한 대출에 한함)에 해당할 것 (1)「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2)「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7조제1항 제4호에 따른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통한 학자금 대출 (3)「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학자금 대출 (4)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자금대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2에 따른 전환 대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2에 따른 구상채권 행사에 원인이 된 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 9415)부칙 제5조에 따라 승계된 학자금 대출
공제제외금액	아래와 같이 대출금의 상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2)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중 감면 받거나 면제받은 금액 (3)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중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의 학자금을 지원받아 상환한 금액

□ 기부금 세액공제

1. 공제대상자

거주자인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의 명의로 지출한 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경우만 공제가능 하다.

<table>
<tr><th rowspan="2">공제대상자</th><th colspan="3">공제대상자요건</th><th rowspan="2">공제대상 기부금</th></tr>
<tr><th>생계요건</th><th>나이요건</th><th>소득금액요건</th></tr>
<tr><td>근로자 본인</td><td>-</td><td>-</td><td>-</td><td>•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 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일반기부금</td></tr>
<tr><td>배우자</td><td>없음</td><td rowspan="5">없음</td><td rowspan="5">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td><td rowspan="5">• 특례기부금
• 일반기부금</td></tr>
<tr><td>직계비속, 입양자</td><td>없음</td></tr>
<tr><td>직계존속</td><td rowspan="3">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
(학업, 취학 등으로 일시퇴거 한 경우 포함)</td></tr>
<tr><td>형제자매</td></tr>
<tr><td>기초수급자, 위탁아동</td></tr>
</table>

2. 기부금의 범위

1) 정치자금 기부금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2) 고향사랑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기부금

-. 개인만 기부가 가능하며, 기부 한도는 개인별 연간 2,000만원 이내이다.

3) 특례기부금 (법정기부금)

(1)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 국내외의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 공공교육기관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 공공의료기관(병원)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전문모금기관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재단법인 바보나눔 등
-. 공공기관(공기업제외)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으로 해당 법인의 설립목적이나 수입금액 등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독립기념관, 대한적십자사, 근로복지공단 등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4) 우리사주조합기부금

대주주 등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금액

5) 일반기부금 (지정기부금)

(1)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 등

(2) 용도가 특정된 기부금
-. 유치원장, 학교장, 기능대학장,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장,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 연구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 사회복지, 문화,예술, 종교, 자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불우이웃돕기, 근로복지진흥기금 출연금, 소기업소상공인출연금 등)

(3) 법정단체(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협회)에 지급하는 특별회비 및 임의 단체에 모든 회비

(4) 사회복지시설에 지출하는 기부금: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5) 해외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6) 국제기구에 지출하는 기부금 : 유엔난민기구, 세계식량계획 등

(7) 노동조합 등에 납부하는 회비

(8)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법령 → 고시・공고・지침 → 공고에서 확인 가능

3. 공제대상금액과 세액공제액

1) 공제대상금액

(1) 공제한도
기부금 공제대상금액은 아래의 기부금 공제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구 분		공제한도
① 정치자금 기부금	Ⓐ 10만원 이하	근로소득금액
	Ⓑ 10만원 초과	(근로소득금액 - ⓐ)
②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이하	(근로소득금액 - ⓐ - ⓑ)
	Ⓓ 1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일반)	(근로소득금액 - ⓐ - ⓑ - ⓒ)
	Ⓔ 1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특별재난지역)	(근로소득금액 - ⓐ - ⓑ - ⓒ)
③ 특례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 - ⓑ - ⓒ - ⓓ)
④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 - ⓑ - ⓒ - ⓓ - ③) × 30%
⑤ 일반 기부금	종교단체 외 기부금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금액 - ⓐ - ⓑ - ⓒ - ⓓ - ③ - ④) × 30%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금액 - ⓐ - ⓑ - ⓒ - ⓓ - ③ - ④) × 10% + Min {(근로소득금액 - ⓐ - ⓑ - ⓒ - ⓓ - ③ - ④) × 20%, 종교단체외기부금[주1]}

(2) 공제순서 및 공제대상 금액 선정

상기의 기부금별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아래 공제순서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기부금별 공제대상금액을 계산한다. 동일 기부금 내에서는 이월된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정치자금기부금→고향사랑기부금→'15년 이후 이월 특례기부금→당해연도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15년 이후 이월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당해연도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15년 이후 이월 종교단체 일반기부금→당해연도 종교단체 일반기부금

※ 기부금별 공제한도내에서 `15년 이후 이월기부금 → 당해연도 지출 기부금 순으로 적용함에 있어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기부금은 다음연도 이월 시킨다.

2) 세액공제액

공제대상금액에 세액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액으로 한다.

(1)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액 계산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계산
10만원 이하	공제대상금액 × (100/110)
10만원 초과 3천 만원 이하	공제대상금액 × 15%
3천 만원 초과	공제대상금액 × 25%

(2)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액 계산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계산
10만원 이하	공제대상금액 × (100/110)
1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일반)	공제대상금액 × 15%
1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특별재난지역)	공제대상금액 × 30%

(3) 특례, 우리사주조합, 일반기부금 세액공제액 계산

공제순서(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종교단체 외 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부연도별 공제대상금액 합계액 기준을 초과하였는지를 판단하여 해당 기부연도별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구 분	세액공제율	구 분	세액공제율
`25년 기부금	1천만원 이하 : 15% 1천만원 초과 : 30%	`19년~`20년 이월 기부금	1천만원 이하 : 15% 1천만원 초과 : 30%
`24년 기부금	1천만원 이하 : 15% 1천만원 초과 : 30% 3천만원 초과 : 40%	`16년~`18년 이월 기부금	2천만원 이하 : 15% 2천만원 초과 : 30%
`23년 기부금	1천만원 이하 : 15% 1천만원 초과 : 30%	`15년 이월 기부금	3천만원 이하 : 15% 3천만원 초과 : 25%
`21년~`22년 이월 기부금	1천만원 이하 : 20% 1천만원 초과 : 35%		

4. 기부금 이월공제

1) 기부금 이월공제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기부금과 기부금 공제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기부금은 아래의 이월공제 기간 동안 이월되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 분		이월공제기간
정치자금기부금 주1		-
고향사랑 기부금 주1		
특례기부금		10년 주2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주1		-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10년 주2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주1) 정치자금, 고향사랑,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경우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주2) 2013.1.1.이후 기부한 기부금부터 소급하여 이월공제기간을 5년 → 10년으로 확대 연장

2) 이월되는 기부금 유형과 이월관리

(1) 기부금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기부금 ("한도초과기부금"이라 함)
기부금별 공제한도 내에서 '14년 이후 지출기부금(이월분) → 당해년도 지출기부금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기부금은 다음연도 이월시킨다.

(2)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기부금

① 결정세액 "0"이 되는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공제순서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부터 월세액세액공제까지의 세액감면, 공제 합계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이 법정, 우리사주조합, 지정기부금의 세액공제합계액보다 작은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법정, 우리사주조합, 지정기부금 세액공제액이 차감 후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기부금은 다음연도로 이월시킨다.

> 차감 후 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에서 월세액세액공제액까지의 합계액)
> ※ 세액감면에서 월세세액공제액까지의 합계액 = 세액감면+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 중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세액공제(또는 표준세액공제)+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납세조합공제+주택임차차입금이자세액공제+월세세액공제
> 즉, 차감 후 산출세액이란 법정, 우리사주조합, 지정기부금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차감하기 전 세액을 말한다.

② 산출세액이 "0"이 되는 경우 (소득공제금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금액을 소득공제금액 합계액이 초과하여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모두 "0"이 됨에 따라 공제받지 못하는 기부금은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시킨다.

□ 특별세액공제 적용특례

1. 적용특례

특별세액공제 항목 중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세액공제 항목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 이혼, 별거, 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 부양가족, 장애인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에 세액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항 목	그 밖의 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항목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적용특례 여부	×	○	○	○	×

2. 적용방법

당해 연도 중에 혼인, 이혼, 별거, 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혼인, 이혼, 별거, 취업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부양자인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에 공제한도를 적용한 공제대상금액에 세액공제율(12%,15%)을 적용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예를 들면 혼인 또는 취업 등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를 둔 경우 혼인 또는 취업 전에 자녀에 대해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부모가 받을 수 있다.

□ 월세액 세액공제

1. 공제대상자

1)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일 것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법소정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자금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일 것
   (2)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000만원 이하인 자(종근무지 포함)일 것
   ※ 2021년 개정 외국인 포함
2)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및 고시원 포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것일 것
3)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2. 공제대상금액

임대차계약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할 총 월세액(월세보증금은 제외)을 총 임차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연도의 임차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 아래의 월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text{월세액} = \text{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에 지급하여야 할 총 월세액} \times \frac{\text{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text{주택임대차 계약기간 해당일수}}$$

3. 세액공제액

월세액 공제대상금액(연 1,000만원 한도)의 15% (총급여5,500만원&종합소득금액4,500만원 이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세액공제액
= 월세액 공제대상금액(연 1,000만원 한도)×15% ((총급여5,500&종합소득금액4,500만원 이하 17%)

4.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 및 제출

1) 공제신청
   집주인이 동의, 확인이나 확정일자 여부에 관계없이 전입신고와 월세를 지급하였다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소득공제 증빙서류
   (1) 주민등록표등본
   (2)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3)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월세 현금영수증 사용액과의 중복공제 제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분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근로자에 한하여 월세 지급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근로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본인이 지급하는 월세액을 공제대상으로 함을 유의해야 한다.

□ 표준세액공제

1. 적용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자로서 소득세법 제 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제 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 95조의2 제2항의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소득·세액공제 적용대상자	중복적용여부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기부금이월액)	×
특별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법정, 지정기부금 세액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
정치자금기부금(10만원 이하분 및 10만원 초과분),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 정치자금기부금(10만원 이하분 및 10만원 초과분),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표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2. 적용방법

1) 연 13만원의 표준세액공제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 표준세액공제 적용대상자

(1)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2)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및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한 근로소득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①과 ② 중 근로소득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적용

①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및 월세액세액공제를 차감(이 경우 표준세액공제는 "0"으로 함) 한 후 결정세액

② 표준세액공제만 차감(이 경우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및 월세액세액공제는 "0"으로 함) 한 후 결정세액

구 분	표준세액공제 적용 여부
① > ②	표준세액공제 적용
① < ②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및 월세액세액공제 적용

※ 근로소득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및 월세액세액공제을 신청한 경우에도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면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 그 밖의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

1. 세액공제

종류	공제액(한도)	제출서류 등
납세조합 세액공제	을종근로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의 3%, 조합원 1인당 연간 100만원 공제한도	납세조합 원천징수영수증
외국납부 세액공제	산출세액×(국외근로소득금액/총 근로소득금액)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주택자금 차입금이자 세액공제	연간 이자상환액 × 30%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신청서 미분양주택확인서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2. 세액감면

감면종류	감면율	관련세법
정부간 협약에 따른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받는 급여에 대한 소득세 감면	100%	소득세법59조의 5
조세조약의 교직자 조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외국인 교수, 교사)	100%	조세조약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T01, T02)	50%, 70%	조특법18조
중소기업 취업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T13)	90%, 70%	조특법30조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T40)	90%(50%)	조특법29의6
중견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T41)	50%(30%)	조특법29의6
성과공유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감면 (T30)	50%	조특법19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T50)	50%	조특법18의3

□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연말정산 시 맞벌이 부부란 부부 모두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부를 말한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타소득 없음)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부를 말한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라도 당해연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1. 인적공제 신청 시 유의 사항

구분	신청 시 유의사항
기본공제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는 맞벌이 부부 중 1명만 신청 ※부양가족에 대해 부부가 각각 중복하여 공제 신청할 수 없음
추가공제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 신청한 사람이 추가공제를 받는 것임 ※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부부가 나누어서 받을 수 없음
자녀세액공제	자녀를 기본공제 신청한 사람이 자녀세액공제를 적용 받는 것임 ※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부부가 나누어서 받을 수 없는 것임.

2. 항목별 소득,세액공제 신청 시 유의사항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내용</th></tr>
<tr><td colspan="2">신용카드 소득공제</td><td>• 카드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각자가 사용한 금액을 공제
•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해당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신청한 사람이 소득공제를 받는 것임</td></tr>
<tr><td rowspan="4">특별세액공제</td><td>보험료</td><td rowspan="4">• 부양가족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은 해당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신청한 맞벌이 부부 중 1인만이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맞벌이 부부 중 1인은 부양가족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에 대한 공제신청을 할 수 없는 것임.

• 맞벌이부부는 소득이 있는 배우자로서 배우자의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신청 할 수 없음.
다만, 배우자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공제 신청가능
※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의 의료비를 공제신청 한 경우에는 해당 배우자는 동 의료비에 대해서 중복 공제신청 불가</td></tr>
<tr><td>의료비</td></tr>
<tr><td>교육비</td></tr>
<tr><td>기부금</td></tr>
</table>

3. 절세전략

(1) 맞벌이 부부의 과세표준 구간별 절세 전략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6%~45%)구조이기 때문에 과세표준구간별 한계 세율에 따라 인적공제, 소득공제 따른 절감효과도 달라진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소득차이로 과세표준과 결정세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배우자에게 공제대상 부양가족을 몰아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하다.
다만, 과세표준과 결정세액이 서로 비슷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을 고르게 배분하여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

(2) 공제문턱을 활용한 소득세액공제금액 극대화 (의료비, 신용카드등사용액 절세전략)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총급여의 25% 초과분)와 의료비세액공제(총급여의 3% 초과분)은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table>
<tr><th>구분</th><th>소득,세액공제 효과</th></tr>
<tr><td rowspan="2">의료비
공제</td><td>•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의료비공제가 가능</td></tr>
<tr><td>(의료비 지출액이 1,200,000원인 경우)

<table>
<tr><th>구분</th><th>근로자본인</th><th>배우자</th></tr>
<tr><td>총급여</td><td>50,000,000</td><td>30,000,000</td></tr>
<tr><td>의료비지출</td><td>1,200,000</td><td>1,200,000</td></tr>
<tr><td>최저사용금액</td><td>1,500,000</td><td>900,000</td></tr>
<tr><td>공제대상금액</td><td>-</td><td>300,000</td></tr>
<tr><td>세액공제액</td><td>-</td><td>45,000</td></tr>
</table>
• 예시에서와 같이 총급여액이 낮은 배우자에게 의료비지출액을 몰아주는 것이 유리
•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신청한 배우자만 해당 부양가족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의료비지출액이 많은 부양가족은 당초부터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td></tr>
<tr><td rowspan="2">신용카드
공제</td><td>•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공제</td></tr>
<tr><td>(신용카드 사용액(공제율 15%)이 12,000,000만원인 경우)

<table>
<tr><th>구분</th><th>근로자본인</th><th>배우자</th></tr>
<tr><td>총급여</td><td>50,000,000</td><td>30,000,000</td></tr>
<tr><td>신용카드사용액</td><td>12,000,000</td><td>12,000,000</td></tr>
<tr><td>최저사용금액</td><td>12,500,000</td><td>7,500,000</td></tr>
<tr><td>초과사용금액</td><td>-</td><td>4,500,000</td></tr>
<tr><td>공제가능금액</td><td>-</td><td>675,000</td></tr>
</table>
• 총급여액이 낮은 배우자에게 부양가족 등의 신용카드사용액을 몰아주는 것이 유리
• 맞벌이부부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할 때 소득이 작은 배우자명의의 신용카드 → 근로자명의의 신용카드 등 순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각각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하여야 하므로 오히려 불리함.</td></tr>
</table>

□ 출산전휴가, 육아휴직자 연말정산

휴직기간 동 근로제공기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휴가, 휴직중인 자도 계속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수행해야 한다.

1. 과세대상 근로소득

휴직기간 중에 회사가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지급주체	근로소득 과세	지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	비 고
회사	○	○	• 출산전후휴가급여(휴가기간 90일) - 우선지원기업 : 90일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 - 상기 이외의 기업 : 최초 60일은 회사에서, 그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고용센터	X	X	

2. 소득, 세액공제 적용

휴직기간도 근로제공 기간에 포함되므로 휴직기간에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3. 연도 중에 휴직중인 직원의 연말정산 시 유의할 점

(1) 휴직자는 연말정산 대상자이기 때문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 총급여액이 1,300만원~1,310만원 정도인 경우에는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등을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다.

(2) 휴직 중인 직원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근로소득 이외에 타소득은 없는 경우에만 한함)인 경우에는 해당 직원의 배우자가 해당 직원을 기본공제신청 할 수 있다.
(근로소득 이외에 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함)

□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1.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요약

외국인의 범위	연말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외국인근로자의 연말정산	①과 ②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음 ①일반적인 연말정산 :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방법의 연말정산주1) ②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 근로소득의 19% 단일세율분리과세주2)
외국인근로자 세액감면 주3)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50% 세액감면 조세조약에 따른 외국인 교수,교사 근로소득세 세액면세

주1) 외국인(거주자, 비거주자 불문)은 주택관련공제(원리금상환액, 저당차입금, 주택마련저축공제, 월세액)을 적용 받을 수 없으며,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배우자 ,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적용불가.

주2) 지급받은 근로소득(비과세소득포함)에 19%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함. 이와 같이 과세특례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주3)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19% 단일세율)적용자는 외국인근로자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음.

2. 거주자 vs 비거주자

거주자로 보는 경우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때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국외에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를 출자한 경우에 한함)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 •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근무기간 이외에 통상 체류를 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경우
비거주자로 보는 경우	•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근무기간 이외에 통상 거주하는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경우 • 주한외교관과 그 가족(대한민국 국민 제외)및 한미행정협정 제1조에서 규정하는 미군 구성원, 군무원과 그 가족

3. 외국인근로자 일반적인 연말정산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 적용되는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거주자	비거주자
인적공제	기본공제	O	△주1
	추가공제	O	△주1
연금보험료공제		O	O
특별소득공제	보험료공제 (건강,장기요양,고용)	O	X
	주택자금공제	O	X
그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O	X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O	X
	주택마련저축	X	X
	투자조합출자공제	O	X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O	X
	우리사주출연금공제	O	O
	고용유지중소기업	O	X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O	X
	청년형 장기펀드	O	X
세액공제	근로소득공제	O	O
	자녀세액공제	O	X
	연금계좌세액공제	O	X
	특별세액공제	O	X주2
	납세조합세액공제	O	O
	주택차입금이자	O	X
	외국납부세액	O	X
	월세액 세액공제	O	X

주1)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 만 적용함
주2)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표준세액공제도 적용하지 않음.

4. 외국인 근로자의 소득 · 세액공제 적용 시 유의사항

공제항목	소득 · 세액공제 유의사항
신용카드	•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 금액은 공제 불가
의료비	• 외국병원에 지출한 금액은 의료비 공제 불가
교육비	• 국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주1)이 본국에 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국외교육비는 공제 불가 주1) 국내근무자의 국외교육비 공제는 연말 현재 대한민국 국적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기부금	• 해외 자선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해당 자선단체가 우리나라 법령에 기부단체로 지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 불가

5. 외국인근로자 19% 단일세율 분리과세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 국내에서 최초 근무를 시작하는 경우로서
국내에서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는 근로소득(비과세소득포함)에 19%를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소득의 소득세액으로 할 수 있다.

(1) 단일세율 적용기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이 되는 과세기간까지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13.12.31 이전부터 근로를 제공한 외국인근로자는 '18.12.31.까지만 적용한다.

구 분	단일세율 적용기간
'14.01.01 이후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경우	• 국내에서 최초 근로제공일부터 20년이 되는 과세기간까지
'13.12.31 이전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경우	• 2014.1.1일 부터 기산일을 적용하여 20년이 되는 과세기간까지

(2) 적용방법

당해 연도 총 근로소득(비과세소득 포함)의 19%를 곱한 금액을 산출세액(=결정세액)으로 하며,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시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감면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3) 19% 단일세율 분리과세 신청

단일세율적용특례를 적용 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외국인 단일세율 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종합소득 합산 배제

19% 단일세율을 적용 받은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 해외파견근로자

1.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에 따른 납세의무

구 분	국내에서 근로제공으로 발생한 소득	국외에서 근로제공으로 발생한 소득
거주자	O	O
비거주자	O	X

2.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요건	비과세금액
국외 등의 건설현장[주1)]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원양어업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500만원
상기 이외의 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100만원

주1) 국외 등의 건설현장과 건설공사에 필요한 장비, 기자재,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진 장소를 말한다.

3. 소득구분 및 소득신고 유형

구분	국내에서 급여지급	외국에서 급여지급	
		납세조합 가입분	납세조합 미가입분
소득구분	원천징수대상소득	원천징수대상소득	원천징수 제외 소득[주1)]
소득신고	연말정산[주2)]	연말정산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다음연도5.31까지)
	회사	납세조합	근로자 본인

주1)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니므로 연말정산대상에서 제외
주2) 납세조합 연말정산분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합산신고 가능

4. 급여의 외화 환산

지급시기	적용환율
정기급여지급일 이전	지급받을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정기급여지급일 이후	정기급여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 서울외국환중개㈜ 홈페이지의 메뉴 중 환율조회에서 조회

5.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금액 = Min (ⓐ, ⓑ)
ⓐ 산출세액 x (국외원천소득[주1] ÷ 종합소득금액)
ⓑ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주1) 국외근로제공으로 국외 및 국내에서 지급받은 국외원천소득금액의 합계액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이월하여 공제한도 범위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이월공제 기간 중 국외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 일용근로자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업종은 1년)미만 고용된 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1. 일용근로자와 일반근로자의 비교

구 분	일용근로자	일반근로자
개념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 1년)미만 고용된 자로서 일급 또는 시급 등으로 급여를 받는 자	동일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된자로서 월급 등의 형태로 급여를 받는 자
원천징수	[일급 -15만원]×(1-55%) x 6%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
연말정산	연말정산 대상 아님	연말정산 대상
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지급일 기준 익월 말일까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반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

2. 일용근로자의 일반근로자의 전환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일일계산에 의한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별도의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

다만, 동일 고용주에게 3월(건설업종은 1년)이상 고용되는 경우 3월(건설업종은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간이세액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일용직 입사시점(전년 입사자라면 1월 1일)부터 발생한 소득을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수행해야 한다.

이 경우 이중소득 발생 방지를 위해 일용근로소득 원천세는 수정신고(경정청구), 이미 제출한 일용직 지급명세서는 감액(취소) 신고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구 분	원천징수	연말정산
최초 3개월 지급금액	일일 계산에 의한 원천징수	전체 지급금액을 연말정산대상소득으로 하여 연말정산 수행
3개월 이후 지급금액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	

□ 부당해고자(복직) 연말정산

법원 판결 등에 의해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를 제공한 연도별로 연말정산을 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1. 소득구분

법원의 판결, 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금원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구분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소득구분
부당해고 기간의 급여 대가		근로소득
손해배상금 등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위약금, 배상금과지연이자 상당액	기타소득
	명예훼손이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	과세제외

2. 적용방법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근로를 제공한 연도별로 연말정산을 재정산 한다.
법원판결이 근로소득이 귀속되는 과세기간(귀속연도)의 경과 전 또는 후에 있는 경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진다.

구 분	적용방법	연말정산시기
귀속연도를 경과한 근로소득	귀속연도별로 연말정산 수행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
귀속연도를 경과하지 않은 근로소득	월별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2월분 급여가 없는 경우 2월 말일)